



# CONTENTS

## 제1장

## 식물검역 개요

|                                       |   |
|---------------------------------------|---|
| Part 01. 식물검역 개요.....                 | 3 |
| Part 02. 2020년도 주요 제·개정 사항.....       | 4 |
| Part 03. 「수출검역단지의 지정 및 관리요령」 개정 ..... | 5 |

## 제2장

## 품목별 수출검역요건

|                        |    |
|------------------------|----|
| I. 「배」 생과실 수출검역요건..... | 9  |
| Part 01. 미국.....       | 11 |
| Part 02. 캐나다.....      | 17 |
| Part 03. 멕시코.....      | 20 |
| Part 04. 호주.....       | 23 |
| Part 05. 뉴질랜드.....     | 27 |
| Part 06. 태국.....       | 28 |
| Part 07. 아르헨티나.....    | 31 |
| Part 08. 브라질.....      | 34 |
| Part 09. 칠레.....       | 37 |
| Part 10. 페루.....       | 40 |
| Part 11. 인도.....       | 42 |
| Part 12. 대만(사과포함)..... | 44 |

## II. 「사과」 생과실 수출검역요건..... 51

|                  |    |
|------------------|----|
| Part 01. 미국..... | 53 |
| Part 02. 태국..... | 57 |
| Part 03. 칠레..... | 60 |

## III. 「포도」 생과실 수출검역요건..... 63

|                    |    |
|--------------------|----|
| Part 01. 미국.....   | 65 |
| Part 02. 캐나다.....  | 67 |
| Part 03. 중국.....   | 69 |
| Part 04. 호주.....   | 72 |
| Part 05. 뉴질랜드..... | 76 |
| Part 06. 태국.....   | 81 |

## IV. 「감」 생과실 수출검역요건..... 85

|                   |    |
|-------------------|----|
| Part 01. 미국.....  | 87 |
| Part 02. 베트남..... | 88 |
| Part 03. 태국.....  | 90 |
| Part 04. 칠레.....  | 93 |
| Part 05. 페루.....  | 95 |

## V. 「감귤」 생과실 수출검역요건..... 97

|                  |     |
|------------------|-----|
| Part 01. 미국..... | 99  |
| Part 02. 태국..... | 102 |
| Part 03. EU..... | 106 |

## VI. 「딸기」 생과실 수출검역요건..... 109

|                   |     |
|-------------------|-----|
| Part 01. 캐나다..... | 111 |
| Part 02. 베트남..... | 112 |
| Part 03. 태국.....  | 114 |
| Part 04. 호주.....  | 116 |

|                               |            |
|-------------------------------|------------|
| <b>VII. 「파프리카」 생과실 수출검역요건</b> | <b>119</b> |
| Part 01. 미국                   | 121        |
| Part 02. 중국                   | 122        |
| Part 03. 베트남                  | 127        |
| Part 04. 필리핀                  | 129        |
| <b>VIII. 「참다래」 생과실 수출검역요건</b> | <b>131</b> |
| Part 01. 대만                   | 133        |
| <b>IX. 「기타」 생과실 수출검역요건</b>    | <b>137</b> |
| Part 01. 미국(토마토)              | 139        |
| Part 02. 캐나다(토마토)             | 140        |
| Part 03. 베트남(토마토)             | 141        |
| Part 04. 당근(미국)               | 142        |
| Part 05. 태국(참외·메론)            | 143        |
| <b>X. 「화훼류」 수출검역요건</b>        | <b>147</b> |
| Part 01. 중국(심비디움묘)            | 149        |
| Part 02. 미국(심비디움묘·호접란묘)       | 151        |

## 참 고 자 료

|                                      |     |
|--------------------------------------|-----|
| 참고 1. 2020년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실적            | 155 |
| 참고 2. 농림축산검역본부(APQA) 지역본부·사무소 및 관할구역 | 157 |





2021

식물검역제도 및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요건

# 1장

## 식물검역 개요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 식물검역 개요

## part 01



### 1 식물검역이란?

식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수출입 되는 식물과 식물성 산물에 대한 병·해충 부착유무를 검사하고 규제병해충이 발견되면 방역조치 (소독·폐기·반송)를 함으로써 농·임산물의 안전생산을 도모하고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임무임

### 2 식물검역 대상 물품

- 모든 식물 및 식물성산물(일부 검사제외가공품 제외)
  - 종자류, 묘목류, 구근류 등 재식용 식물
  - 과일류, 야채류, 절화류 등의 생식물류
  - 곡류(밀·옥수수·콩 등), 사료용 식물(대두박, 채종박 등)
  - 원목류, 각재류 등의 목재 및 기타 염료, 기호, 향식료, 건초류 등
- 병해충, 흙
- 상기 물품의 용기 포장

### 3 농산물 수출 시 유의사항

#### ☐ 수출상대국의 신뢰 축적을 위한 수출검역요건 준수

- 상대국의 검역요건을 충족시켜 병해충이 부착되지 않은 농산물 수출

#### ☐ 상대국의 검역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수출국으로부터 부당한 검역규제 받을 경우 우리본부에 전달
- 수출 유망국가 및 품목, 상대국과의 해결과제를 수시로 제안

#### ☐ 수출 추진 시 검역적 애로사항 수시 접수

- 수출식물검역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수출담당자(☎054-912-0624)에게 연락바람
- 업무처리 중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조치 하겠음

# 2020년도 주요 제·개정 사항

## part 02



### ▣ 2020년 제정 관련 고시

- 「한국산 감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재배지검역, 포장 전 2회 이상 선별, 저온창고 보관 등
- 「한국산 감 생과실의 페루 수출 검역요령」
  -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예찰/방제기록, 저온처리
- 「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검역요령」
  - GAP 인증,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예찰/방제기록, 재배지검역
-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 재배온실 및 선과장 등록, 재배지검역, 재배지 IPM 이행 등
- 「한국산 당근 미국 수출검역요령」
- 「한국산 입병버섯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 ▣ 2020년 개정된 수출 관련 고시

-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개정
  - 수출단지 요건, 지정절차 등 공통사항 통일 및 중복양식 삭제
-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 MB 훈증소독 면제 화물의 경우, 매년 12.1일~익년 3.31일까지 수출가능
  - 벚초파리 예찰조사(수확 4주전~수확시까지), 딸기모무늬병 육안검사 2회
- 「한국산 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 호주 배 수출 가능 진주지역 추가(나주, 상주, 진주, 하동)
-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 포장상자 외면에 표기되어야 하는 정보 변경  
(전) “For the Philippines”, 선과장 코드번호 → (후) “For the Philippines”, 재배지 등록번호
- 한국산 사과, 배, 복숭아 신선농산물의 컨테이너번호 부기제외

#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개정

## part 03



- 매년 수출선과장 등록은 수출단지 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재배지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 수출검역단지 요건 통일

- 수출물량을 지속 확보할 수 있는 규모,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
- 행정구역(시군) 단위로 집단화
- 수출선과장
  - 선과 전·후 수출용 농산물을 구분·격리하여 보관할 저장시설이 구비
  - 출입문에는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에어커튼 또는 고무커튼 등이 설치
  - 창문 등 열린 구멍에는 1.6mm 이하의 방충망이 설치
  - 수입국 요구할 경우, 포장구역 격벽, 선과장 트랩설치, 소독시설 구비 등

### ■ 수출검역단지 지정·관리 절차를 표준화 및 공통사항 통일

- 수출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거쳐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APQA) 지역본부 사무소에 제출
- 국가별로 상이한 수출단지 지정절차를 통일하고 중복 양식 삭제
  - 1개 수출단지가 여러 국가로 동시에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 시스템 구축
  - 통합고시와 중복되는 개별고시의 양식(별지서식)을 삭제
- 수출단지 지정번호, 선과장 번호, 참여농가번호 부여방식 통합
  - 수출단지 운영 : 국가중심 ⇒ 품목중심으로 개선

### ■ 수출참여농가 및 수출재배지 관리 준수사항

- 관리책임자 및 참여농가는 재배 중 농산물의 병해충 관리 및 수출검역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하는 검역요건 교육수료

- 참여농가는 농촌진흥청이 권고하는 「농약사용안전지침」에 따라 적절한 방제를 실시
  - 수입국 요구할 경우, 방제기록부 기록, 재배지 표지판 설치

## ■ 수확후 관리(선과, 포장, 보관, 수출검역)

- 수출단지 대표자의 선과장 관리
  - 선과 시작전 선과장과 부대시설 정비하고 사전점검 요청
  - 선과계획서를 1주일 단위로 작성하여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정보통신망 포함)
  - 선과인력 대상으로 검역적 안전조치와 선별방법 교육 실시
- 관리책임자의 선과 중 조치사항
  - 재배지검역에 불합격된 농산물(또는 미참여농가)이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
  - 수출 선과를 위해 선과장으로 반입된 농산물은 선과 전까지 구분된 장소에 보관
  - 병해충 감염 농산물 선별하여 신속히 밖으로 배출하거나 밀폐 보관 후 폐기
  - 선과 작업이 일몰 전에 종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매일 선과실적을 선과실적대장에 기록하고,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제출(정보통신망 포함).
  - 선과장 및 선과장 주변의 청결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
- 포장 및 보관
  - 포장상자에는 선과장명(또는 선과장번호), 농가명(또는 농가번호) 등 필요한 정보 표기.  
예) 품목명(영문)-지역·사무소코드-수출단지일련번호-선과장일련번호-농가일련번호
  - 관리책임자는 내수용, 선과 전·후 또는 다른 국가 수출용 농산물과 구분·격리 보관
  - 포장완료된 농산물은 밀폐된 운송수단 등을 통해 관할사무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동하여야 함.
- 수출검역
  -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실시(다만, 수입국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식물별 현장검역 방법과 실험실 정밀검역 방법」에 따라 실시)
  - 수출 컨테이너에는 수출단지에서 생산·관리된 해당 품목만 선적하는 것을 원칙

## ■ 참여농가 제외

- 해당 농가가 부정·불법 수출에 연루된 경우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농가.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농가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제8조의 재배지 관리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수출농산물이 수입국 도착지검역에서 우려병해충이 검출되어 통보된 경우

2021

식물검역제도 및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요건

## 2장

# 품목별 수출검역요건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 I. 「배」 생과실 수출검역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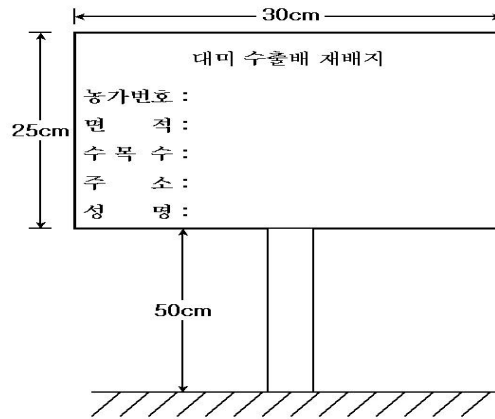




## 1 수출단지 요건

가. 수출검역단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정된 단지의 수출과수원에는 “대미 수출배 재배지” 표찰 설치



- 수출선과장에 선과 감독 감독 기록부 비치

나. 생산자조직 대표는 3월31일 까지 수출단지를 지정 신청

다. 신규 수출단지(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저장시설)은 수출참여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동식물검역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라. 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수출과수원이나 선과장 변동이 있을 경우 검역본부 승인을 받아야함

마. 선과장 및 저장시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4월 말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예비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예비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6월말까지 협력기관을 통하여 선과장 지도, 평면도 운영계획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 동식물검역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바. 수출과수원 내에는 배나무 이외의 과수나무가 없어야 하며, 다른 속 식물의 과수원이나 과수나무와 인접해 있는 경우 최소한 가지가 서로 닿지 않을 정도로 분리되어야 함

## 2

##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가. 재배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받은 봉지만을 사용하여 **과실의 직경이 약 2.5~3.5Cm일 때 시작하여 6월 30일까지 배봉지 씌우기를 완료**하여야하며, 협력기관은 수출과수원에서 봉지 씌우기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Ⅱ 대미 수출용 배봉지 요건

- 배 봉지 겉면 중앙부에 “For USA” 표기(글자크기 30포인트 이상, 진하게)
- 배 봉지 겉면 하단(5cm이내 공간)에 “APQA Approved” 및 제작사 표기(글씨크기 자음, 10-12포인트 권장)



나. 수출 배 재배지검역 신청서(재배지위치가 표시된 지도 첨부)를 매년 4월 말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

라. 재배지 검역은 봉지씌운 직후(1차) 및 수확 전 30일 이내(2차)에 실시

마. 선과책임자는 과실의 포장에 완료된 후 식물검역관이 지시하는 대로 샘플 추출기준을 따르고, 검역용 샘플 추출 및 검역에 필요한 인력 제공

바. 수출검역 샘플 추출

- 당일 선과한 한 농가 또는 여러 농가의 과실을 합쳐서 검역롯트를 구성
- 선과책임자는 각 검역단위별로 **포장이 완료된 상자에서 최소 과실 149개의 대표샘플 채취하여 한·미 합동검역**
- 추출한 샘플은 검역 시까지 검역롯트 별로 구분 보관

사. 추출한 샘플은 검역 시까지 검사롯트 별로 구분하여 보관

아. 검역결과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분류동정을 실시하고 분류동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검역롯트의 과실은 다른 화물과 격리 보관

- 분류동정 결과 검역적으로 중요한 종일 경우 당해 검역롯트는 불합격 처리하고 수출에서 제외
- 불합격된 검역롯트는 재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선과장 또는 저장소로부터 즉시 반출
- 비검역병해충이나 상처 및 물리적 기형과가 발견되는 경우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수출에서 제외

### Ⅰ 샘플 추출 위반시 조치사항

- ① 최초 위반시 : 미 동식물검역원이 협력 기관(수출검역단지)에 경고장 발송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
- ② 두 번째 위반시 : 미 동식물검역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선과장의 모든 직원에 대해 교육 실시
- ③ 세 번째 위반시 : 시준 남은 기간동안 선과책임자 교체하고, 해당 선과장은 문제 해결 전까지 선과 중단,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될 경우 해당 선과장은 시준 전 기간 동안 수출 중단

자. 대미 수출 배에 대해 타 지역 수출을 위한 저장과실과 구분되도록 미 동식물검역원이 승인한 전용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선적 시까지 다른 저장시설로 옮기지 않음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가. 대미 수출용 배 생산단지 대표는 매년 수출 선과 30일 전까지 선과장 및 저장시설을 점검·보완한 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나. 선과장 별로 2명 이상의 선과책임자 지정

※ 수출단지대표는 선과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그 결과(이름, 직책, 연락처)를 수출 선과 30일 전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통보

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매년 대미 수출용 선과 전 샘플링 기준 및 선과요령 등에 대해 선과책임자와 선과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검사기간 동안 합격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된 배만 선과장에 반입 및 봉지가 손상 및 훼손되지 않은 배만 선과장에 반입되도록 관리
- 선과작업은 8~9월 동안에는 최소한 일몰 30분 전에 중지하고 10~12월에는 일몰시 중지
- 다른 시장 용도의 과실도 동일 선과라인에서 선과 및 포장될 수 있지만, 미국 수출용 과실과 구분되어야 하고 별도의 저장 시설에 저장되어야 함

#### 4 대미 생과실 수출단지 취소요건

- 가. 수출단지 대표 또는 선과장 대표가 부정·불법 수출에 이용되거나 관련된 경우
- 나. 수출단지 요건에 미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요구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다. 소독처리 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소독 처리하여 수출하려다 적발된 경우
- 라.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취소에 따라 수출단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마. 다음의 수출검역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식물검역관에게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재배지검역에 불합격한 농가 또는 생산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과실을 수출하기 위해 선과장에 반입한 경우
  - 봉지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배 생과실을 선과장에 반입한 경우
  - 미국 수출용 과실을 내수 또는 다른 나라 수출용 과실과 같은 장소에 보관하거나 동시에 선과 및 포장을 한 경우
  - 선과계획서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컨테이너 선적이전 까지 검역이 완료된 과실의 병해충 재감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수출용 상자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 저장 요건 위반시

#### 5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배의 경우)

- *Alternaria kikuchiana*(Black spot) - 검은무늬병
- *Monilinia(Sclerotinia) fructigena*(Brown rot) - 잿빛무늬병
- *Carposina sasakii*(Peach fruit moth) - 복숭아심식나방
- *Conogethes(Dichocrocis) punctiferalis*(Yellow peach moth) - 복숭아명나방
- *Grapholita molesta*(Oriental fruit moth) - 복숭아순나방(British Columbia주에서만 규제)
- *Numonia pirivorella*(Pear fruitworm) - 배명나방
- *Tetranychus truncatus* - 뽕특응애
- *Amphitetranychus viennensis*(Hawthorn spider mite) - 뽕나무응애



### 미국의 우려 병해충 도해



복숭아심식나방 성충



복숭아심식나방 유충



복숭아심식나방 피해 과



가루깍지벌레 피해



온실가루깍지벌레



복숭아순나방 성충



흑반병 피해 잎



복숭아심식나방 피해 과



흑성병 피해 과



흑성병 피해 잎



윤문병 피해 잎



윤문병 피해 과



# 캐나다

## part 02



### Ⅰ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과수원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1 수출단지 요건

- 가. 신규 수출단지의 지정승인신청서는 3월말까지 제출
- 나. 배는 신품종 배(황금배, 추황배, 풍수배, 수정배 등)가 위주가 되어야 함
- 다. 수출단지 과수원은 당해 과수원내 복숭아속식물(*Prunus* spp.)을 비롯한 캐나다측 규제대상병해충의 기주식물이 없어야 함
  - 복숭아속식물: 벚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매실나무 등
- 라. 수출재배단지는 일반재배단지와 구분되어야 하고, 다른 나라의 수출단지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집중관리가 용이하도록 가급적 집단화
- 마. 단지 내 대캐나다 수출 전용 선과장 활용이 가능한 곳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지정된 수출재배단지의 시장·군수는 매년 수출하고자 하는 당해 연도 3월말까지 응애예찰 및 재배지검역신청서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
- 나. 재배지 검사시기 : ‘봉지씌운 직후(6-7월중)’와 ‘수확 전’(2회 실시)으로 응애발생예찰과 병행하여 실시
- 다. 재배지 검사 결과는 “응애발생예찰 및 재배지검역기록부”에 기록
- 라. 예찰은 해당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의 협조를 받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하되, 과수원에 서의 잎채취 등 작업은 관할 지자체가 전담하고, 응애의 분류 동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담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가. 배는 봉지가 씌워진 채로 선과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봉지가 파손되거나 제거된 것, “캐나다 수출용” 봉지가 아닌 것은 수출용에서 엄격히 제외

나. 선과장은 수출기간 동안 캐나다 수출용 배의 전용 선과장으로 활용

- 내수 또는 캐나다와 다른 나라의 수출용 과실이 동 시설에 보관되어 있거나 혼재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선과장 시설은 병해충·흙·식물잔재물이 버려지거나 오염된 과실이 없도록 깨끗이 관리

다. 선과된 과일은 포장전 에어컴프레셔 등으로 잔류 응애 제거작업을 하여야 하며, **수출검역(선과장검사)은 포장작업이 완료된 물량중 5% 이상 검역**

라. 검역완료된 과일을 선과장에서 저장(저온)창고로 운반할 때는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당해 창고의 출입문은 식물검역관이 확인

마. 포장박스에는 “캐나다 수출용”(For Canada)과 “재배자명”을 영문으로 표기

바. 수출검역증 부기 사항

- British Columbia주로 수송될 화물에 대하여,  
“The material was produced under a pest management program and is free of *Alternaria gaisen* (=A. *kikuchian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Dichocrocis) punctiferalis*, *Grapholita molesta*, *Numonia pirivorella*, *Monilinia fructigena*, *Tetranychus truncatus* and *Amphitettranychus viennensis*”
  - British Columbia주 이외의 주로 수송될 화물에 대하여,  
“The material was produced under a pest management program and is free of *Alternaria gaisen* (=A. *kikuchian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Dichocrocis) punctiferalis*, *Numonia pirivorella*, *Monilinia fructigena*, *Tetranychus truncatus* and *Amphitettranychus viennensis*.”
- 수출검역증명서는 선적전 14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며, 원본은 캐나다행 선적화물에 첨부

## 4 기 타

화물은 병해충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캐나다 도착지 검역 실시

- 내용물의 5%를 샘플로 채취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처음 채취한 5%의 샘플에서 병해충의 활동 증상이나 병해충이 발견되면 샘플을 추가로 채취해서 조사 가능
- 병해충 발견 : 실험실 분류동정을 위하여 샘플이 보내질 수 있고, 당해화물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치

## 5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사과의 경우)

- *Monilinia fructigena* - 과수균핵병
  - *Gymnosporangium yamadae* (Rust) - 붉은별무늬병
  - *Carposina sasakii* (Peach fruit moth) - 복숭아심식나방
  - *Conogethes (Dichocrocis) punctiferalis* (Yellow peach moth) - 복숭아명나방
  - *Grapholita molesta* (Oriental fruit moth) - 복숭아순나방(British Columbia주에서만 규제)
  - *Tetranychus truncatus* - 몽톡응애
  - *Amphitetranychus viennensis* (Hawthorn spider mite) - 벗나무응애
- ※ 상기 병해충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사과에서 가장 발견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간주되는 검역병해충 목록이며, 이 목록에 모든 검역병해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님.

(배의 경우)

- *Alternaria kikuchiana* (Black spot) - 검은무늬병
- *Monilinia (Sclerotinia) fructigena* (Brown rot) - 잿빛무늬병
- *Carposina sasakii* (Peach fruit moth) - 복숭아심식나방
- *Conogethes (Dichocrocis) punctiferalis* (Yellow peach moth) - 복숭아명나방
- *Grapholita molesta* (Oriental fruit moth) - 복숭아순나방(British Columbia주에서만 규제)
- *Numonia pirivorella* (Pear fruitworm) - 배명나방
- *Tetranychus truncatus* - 몽톡응애
- *Amphitetranychus viennensis* (Hawthorn spider mite) - 벗나무응애

# 멕시코

## part 03



### Ⅰ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과수원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1 수출단지 요건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정된 단지의 수출과수원에는 “멕시코 수출용 배 과수원” 표지판을 설치

Pear orchard for export to Mexico  
(멕시코 수출용 배 과수원)

- Orchard unique numeric code no.(수출과수원 고유등록번호):
- Area(재배면적):            m<sup>2</sup>
- Number of trees(재배주수):
- Owner's name(재배자명):

- 수출선과장에 선과 감독 감독 기록부 비치

나. 생산자조직 대표는 4월 30일 까지 수출단지를 지정 신청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가. 봉지를 씌워 재배해야함

나. 참여농가는 병해충 예찰기록부와 별도의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의 모니터링 결과를 기록해야 함

- 예찰기록부와 모니터링 결과는 수출선과장에서 일괄 보관할 수 있음

다. 단지 대표자는 재배기간 중 재배지 검역을 신청하여야 함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가. 선과장의 관리자는 배 생과실의 포장일자, 수출검역희망일자, 컨테이너 선적 또는 반출일자등에 대해 수출검역 전 관할 지역 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

나. 포장상자에는 배 생과실에 대한 정보 및 To Mexico가 표시되어야 함

- Species:
  - Variety:
  - Orchard unique numeric code no.:
  - Packinghouse unique numeric code no.:
  - Packing date:
- “To Mexico”

다. 수출검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 각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샘플을 채취하여 실시 (단 포장상자 개수가 1,000박스 미만인 경우에는 19박 검사)

라. 수출검역증명서 부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① Container number(컨테이너 번호), 필요에 따라 Container seal number (컨테이너 봉인번호)도 기재 가능
- ② “This product meets the Work Plan agreed between SAGARPA and APQA, being free of quarantine pests alive.” (동 화물은 SAGARPA와 APQA 간에 합의한 워크플랜에 적합하고,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 4 기 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다음에 해당될 경우 검역로트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불합격 조치를 할 수 있음

- ①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알, 유충, 번데기, 약충, 또는 성충 등)이 검출된 검역로트는 불합격 조치되며 해당 수출과수원은 해당 수출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멕시코 수출에서 제외
- ② 검역병해충 검출 이외에 서류상 미비 또는 식물체 잎 혼입 등의 문제로 불합격된 경우에는 해당 수출과수원의 파렛트(파렛트별로 분리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만 불합격 조치

- ③ 검역병해충 검출로 인하여 불합격 조치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에서 이미 합격되어 수출선과장에 저장되어 있는 배 생과실은 멕시코로 수출될 수 없으며, 해당 수출과수원산 배 생과실이 멕시코로 수송 중인 경우에는 APQA가 해당 수출화물의 정보(수출과수원명, 선박명, 컨테이너번호,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DGSV에 통보하여야 함

## 5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 해충 14종 〉

*Grapholita molesta* (복숭아순나방)  
*Acrobasis privorella* (배명나방)  
*Carposina sasakii* (복숭아심식나방)  
*Spilonota ocellana* (사과흰애기잎말이나방)  
*Amphitetranycus viennensis* (Hawthorn spider mite)  
*Dysmicoccus wistariae* (등나무가루깍지벌레)  
*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깍지벌레)  
*Rhynchites heros* (복숭아거위벌레)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Archips breviplicanus* (사과무늬잎말이나방)  
*Ceroplastes japonicus* (거북밀깍지벌레)  
*Crisicoccus matsumotoi* (버들가루깍지벌레)  
*Prociphilus kuwanai* (배나무면충)  
*Pseudolaucaspis pentagona* (뽕나무깍지벌레)

### 〈 병원균 5종 〉

*Alternaria gaisen* (검은무늬병)  
*Botryosphaeria dothidea* (겉무늬썩음병)  
*Gymnosporangium asiaticum* (붉은별무늬병)  
*Molininea fructigena* (잿빛무늬병)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yricola* (Apple ring rot)

## 호 주

### part 04



#### ■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참여농가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1 수출단지 요건

-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 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나. 호주 검역당국이 승인한 지역(나주, 상주, 진주, 하동)의 수출단지에서 생산되어야 함
- 다. 생산자조직 대표는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 및 등록해야 함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참여농가는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적절한 방제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참여농가는 방제기록부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함(검역에서 부적합 사례 발생 시 역추적할 수 있도록)
- 나. 과실의 지름이 2.5cm 이하일 때 두 겹으로 된 봉지를 씌워 재배해야 함
- 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기간 중 재배지검역을 신청해야 함

#### 3 선과 및 포장(보관)

- 가. 선과 중에는 참여농가에서 생산된 배만 선과장으로 반입해야 함
- 나. 선과장으로 반입된 배는 생산자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반입 및 보관해야 함
- 다. 봉지가 손상된 배 및 낙과된 배는 수출용으로 선과하지 않아야 함
- 라. 호주 수출용 배는 내수용 배와 섞이거나 함께 보관되지 않아야 함

- 마. 포장재는 합성원료이거나 식물성인 경우에는 가공된 것을 사용해야 함
- 바. 수출단지에서 생산 및 포장된 배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
- 포장 직후 컨테이너에 선적하여 봉인한 후 도착지까지 개방되지 않아야 함
  - 포장상자 혹은 파레트를 비닐랩으로 포장하여야 함
  - 통기 구멍이 있는 상자는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하여야 함
- 사. 포장상자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함
- 호주 수출용 “For Australia” 표시
  - 참여농가(생산자) 롯트번호
  - 선과장 등록번호 또는 선과장 이름
- 아. 비닐랩에 포장되어 파렛트화 된 화물의 경우, 포장상자에 표기되어야 할 정보를 파레트 카드에 표시하여야 하며, 파레트 카드에는 등록된 과수원을 역추적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가 표기되어야 함
- 자.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저온창고 내에서 다른 과실과 격리되고, 선적 전까지 1~3℃에 보관하여야 함

## 4

### 수출검역

- 가. 수출검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 등록된 각각의 참여농가별로 일자별 수확 및 선과된 과일로 구성된 롯트 단위로 검역
  - 모든 롯트는 600개 생과실(생과실 1,000개 이하의 롯트는 450개)에 대하여 검사
- 나. 줄기마름병이 검출된 롯트는 수출에서 제외하고, 해당 롯트와 함께 구성되었던 화물의 다른 롯트에 대해서는 재검역 실시. 줄기마름병이 지속 검출되면 수출 중단될 수 있음
- 다. 식물검역증명서 기재사항
- 참여농가 등록번호 또는 적합한 롯트번호
  - 선과장 등록번호 또는 이름
  - 롯트별 박스 수
  - 검역일자
  -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
  - 다음의 부기사항



-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호주 식물검역당국의 한국 배 수출 약정에 따라 생산 및 검역되었음 (Produced and inspected under the Korean pear arrangement between the Korean and Australian NPPOs.)”
- ② “이 화물의 배는 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었음 (Pears from this consignment were produced in orchards free from fire blight(caused by *Erwinia amylovora*) and black stem blight (caused by *Erwinia pyrifoliae*).)”

## 5 기 타

- 가. 한강 이남지역에서 과수가지검은마름병(*Erwinia pyrifoliae*, black stem blight)이 검출되면 호주 검역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호주 검역당국의 공동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체 수출프로그램이 중단됨
- 나.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라도 가지검은마름병을 제외한 *Erwinia* 속(*Erwinia* spp., 과수화상병 포함)이 검출되면 호주 검역당국에 즉시 통보해야 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호주 검역당국의 공동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체 수출프로그램이 중단됨
- 다. 호주 검역당국은 도착지에서 다음과 같이 검역함
- 증명서 및 봉인의 적합성 유무를 확인, 관련 증명서가 적합하지 않거나 봉인이 파손된 경우 호주 검역당국은 반송할 권한을 가짐
  - 병해충 및 기타 규제물질에 대하여 검역함(병해충이 발견되면, 적절한 소독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소독처리 하고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함
  - 화물당 600개의 생과실을 검역함

## 6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Alternaria gaisen* (Black spot, 검은무늬병)
-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sp. *piricola* (Physalospora canker, 윤문병)
- *Erwinia pyrifoliae* (Black stem blight, 가지검은마름병)
- *Gymnosporangium asiaticum* (Japanese pear rust, 적성병)
- *Gymnosporangium sabinae* (Juniper pear rust, 적성병)
- *Gymnosporangium shiraianum* (Pear juniper rust, 적성병)
- *Gymnosporangium unicolorne* (Rust, 적성병)

- *Gymnosporangium* spp.
- *Monilinia fructigena* (Brown rot, 잿빛무늬병)
- *Neonectria ditissima*=*Neonectria galligena* (European canker, 흑병)
- *Phomopsis fukushii* (Phomopsis fruit rot, 줄기마름병)
- *Venturia nashicola* (Pear scab, 흑성병)
- *Amphitetranychus viennensis* (Hawthorn spider mite, 벚나무응애)
- *Adoxophys orana*, *Adoxophyes* sp. (summer fruit tortrix,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
- *Aphanostigma iakusuiense* (Pear phylloxera, 콩가루벌레)
- *Carposina sasaki* (Peach fruit moth, 복숭아심식나방)
- *Crisicoccus matsumotoi* (Matsumoto mealybug, 버들가루깍지벌레)
- *Ectomyclois pyrivorella* (Pear fruit moth, 배명나방)
- *Grapholita molesta* (Oriental fruit moth, 복숭아순나방)
- *Phenacoccus aceris* (Apple mealybug, 사과가루깍지벌레)
- *Plancoccus kraunhiae* (Japanese mealybug, 온실가루깍지벌레)
- *Pseudococcus comstocki* (Comstock mealybug, 가루깍지벌레)
- *Rhychites foviepennis* (Korean pear weevil)
- *Rynchites heros* (Peach curculio, 복숭아거위벌레)
- *Tetranychus kanzawai* (Kanzawa spider mite, 차응애)
- *Venturia nashicola* (Pear scab, 흑성병)

## 7 예찰조사 대상 병해충 목록

- *Alternaria gaisen* (Black spot, 검은무늬병)
-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sp. *piricola* (Physalospora canker, 윤문병)
- *Erwinia pyrifoliae* (Black stem blight, 가지검은마름병)
- *Gymnosporangium asiaticum* (Japanese pear rust, 적성병)
- *Gymnosporangium sabinae* (Juniper pear rust, 적성병)
- *Gymnosporangium shiraianum* (Pear juniper rust, 적성병)
- *Gymnosporangium unicolorne* (Rust, 적성병)
- *Monilinia fructigena* (Brown rot, 잿빛무늬병)
- *Neonectria ditissima*=*Neonectria galligena* (European canker, 흑병)
- *Venturia nashicola* (Pear scab, 흑성병)

# 뉴질랜드

## part 05



### Ⅰ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참여농가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1 수출단지 요건

-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 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나. 수출단지 대표자는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 및 등록해야 함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해야 함
- 나. 참여농가는 뉴질랜드의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적절한 방제조치를 실시해야 함

### 3 선과 및 포장(보관)

- 가. 선과 중에는 참여농가에서 생산된 배만 선과장으로 반입해야 함
- 나. 수출단지 대표자는 한국산 배가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포장하고 선적해야 함

### 4 수출검역

- 가. 식물검역증명서 기재사항
  - ① “적절한 공식 절차에 따라 검역되고, 검역 결과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명기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검역병해충이 없음”
  - ② “과실파리 방제에 효과적인 합의된 조치를 해야 하며”
  - ③ “*Carposina sasakii*, *Monilinia fructigena*, *Tetranychus kanzawa*에 대한 적절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음”

### 5 도착지 검역

- 가. 실제 화물과 첨부된 식물검역증명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역함
  - 화물 당 600 단위(개)를 표본 추출하여 검역함
  - 우려병해충 유무 검역을 실시할 수 있음
  - 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거나, 또는 효과적인 소독처리가 된 경우에는 합격 됨



## ■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과수원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참여농가는 GAP를 이행하여야 함

### 1 수출단지 요건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출선과장은 표준작업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 비치

나.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 선과 개시 30일 전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

### 2 재배지 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가. 참여농가 준수사항

- 병해충종합관리(IPM) 또는 태국측 우려병해충 관리를 위한 방제활동 실시
- 농산물우수관리(GAP) 이행
- 방제기록부 기록 및 보관

나.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선과20일전까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승인서 사본과 함께 참여농가 목록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가. 각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함

|                                |                  |
|--------------------------------|------------------|
| 1. Product or produce of Korea | 1. 한국산 상품 또는 농산물 |
| 2. Name of exporting company   | 2. 수출 업체명        |
| 3. Name of fruit               | 3. 과실 명          |
| 4. Packinghouse code (PHC)     | 4. 선과장 등록 번호     |
| 5. Production unit code (PUC)  | 5. 참여농가 등록 번호    |

〈 영문 표기 사항 〉

〈 국문 번역 〉

나. 생과실이 개별 상자에 포장되어 수출되는 경우, 각 포장상자 마다 “EXPORT TO THAILAND”(태국 수출용)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 부착

- 포장상자가 화물용 컨테이너에 팰릿(pallet)으로 적재되어 수출되는 경우, 팰릿(pallet)의 4면에 동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다. 수출검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 각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 샘플을 채취하여 실시
- 수출검역 결과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 하여야함 (단, 소독 방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 검역될 수 있음)

라. 수출검역증명서 부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The consignment of (품목명) frui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import of (품목명) from Korea to Thailand.”(“동 (품목명) 생과실 화물은 한국산 (품목명) 생과실의 태국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준비되었음.”)
-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 화물만 해당)

## 4 기 타

가. 해당 화물이 태국 수입지에 도착하면 DO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수입 검역 실시

나. 화물에 대한 샘플은 DOA 식물검역관 재량에 따라 임의로 채취되며, 살아있는 병해충 검출시 분류동정 실시 (해당 화물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 보류)

다. 1,000개 미만의 과실 화물의 경우 450개 또는 화물의 100%를 검사(1,000개 이상의 과실 화물의 경우 600개에 대하여 샘플 검사 실시)

## 5

##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병(중)

## ✓ 진균(14)

*Alternaria gaisen* (검은무늬병)  
*Botryosphaeria obtusa* (검은썩음병)  
*Diaporthe eres* (줄기마름병)  
*Gibberella avenacea*  
*Gymnosporangium asiaticum* (붉은별무늬병)  
*Gymnosporangium shiraianum* (세모붉은별무늬병)  
*Monilinia fructicola* (잿빛무늬병)  
*Monilinia fructigena* (잿빛무늬병)  
*Monilinia laxa* (잿빛무늬병)  
*Mycosphaerella pomi* (열매점무늬병)  
*Neonectria ditissima*  
*Phyllachora pomigena*  
*Venturia nashicola* (검은별무늬병)  
*Venturia pyrina*

## ✓ 세균(1)

*Erwinia pyrifoliae* (가지검은마름병)

## 해충(중)

## ✓ 응애(4)

*Epitrimerus pyri* (배나무혹응애)  
*Amphitetranychus viennensis* (벚나무응애)  
*Bryobia praetiosa* (클로버응애)  
*Panonychus ulmi* (사과응애)

## ✓ 딱정벌레목(2)

*Rhynchites foveipennis* (어리복숭아거위벌레)  
*Rhynchites heros* (복숭아가위벌레)

## ✓ 노린재목(16)

*Eriosoma lanigerum* (사과면충)  
*Hyalopterus pruni* (복숭아가루진딧물)  
*Ceroplastes japonicus* (거북밀각지벌레)

*Parthenolecanium corni* (말채나무공각지벌레)  
*Lepidosaphes conchiformis* (배나무굴각지벌레)  
*Lepidosaphes ulmi* (사과굴각지벌레)  
*Lopholeucaspis japonica* (배나무흰각지벌레)  
*Pseudaonidia duplex* (조개각지벌레)  
*Pseudaulacaspis pentagona* (뽕나무각지벌레)  
*Prociphilus kuwanai* (배나무면충)  
*Dolycoris baccarum* (알락수염노린재)  
*Crisicoccus matsumotoi* (버들가루각지벌레)  
*Dysmicoccus wistariae* (등나무가루각지벌레)  
*Phenacoccus aceris* (긴숨각지벌레붙이)  
*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각지벌레)  
*Cacopsylla pyrisuga* (배나무이)

## ✓ 나비목(17)

*Carposina sasakii* (복숭아심식나방)  
*Spulerina astaurota* (배나무굴나방)  
*Orgyia antiqua* (납은무늬독나방)  
*Acrobasis pyrivorella* (배명나방)  
*Nephopterix bicolorella* (줄노랑알락명나방)  
*Ostrinia scapulalis* (콩줄기명나방)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Archips breviplicanus* (사과무늬잎말이나방)  
*Archips crataegna* (뽕무늬잎말이나방)  
*Archips fuscocupreanus* (검모무늬잎말이나방)  
*Archips xylosteanus* (모무늬잎말이나방)  
*Grapholita dimorpha* (복숭아순나방붙이)  
*Grapholita molesta* (복숭아순나방)  
*Pandemis heparana* (갈색잎말이나방)  
*Spilonota albicana* (사과속애기잎말이나방)  
*Spilonota ocellana* (사과흰애기잎말이나방)  
*Argyresthia conjugella* (사과좁나방)

## ✓ 벌목(1)

*Hoplocampa coreana* (애배잎벌)

## ✓ 총채벌레목(1)

*Taeniothrips inconsequens* (더덕어리총채벌레)

# 아르헨티나

## part 07



### Ⅰ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과수원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1 수출단지 요건

-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출선과장에 선과 감독 기록부 비치
- 나. 생산자조직 대표는 매년 4월30일 까지 수출단지를 지정 신청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봉지를 씌워 재배해야함(5~6월 봉지 씌우기, 검역본부 확인)
- 나. 참여농가는 아르헨티나 우려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및 관리
  -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농촌진흥청)에 따라 적절한 약제 방제 실시
  - 병해충 관리 상황을 기록·보관
- 다. 단지 대표자는 재배기간 중 재배지 검역을 신청하여야 함
  -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재배지 검역 2회(봉지씌우기 직후, 수확 30일 이내) 실시
  - 아르헨티나 우려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방제 조치, 방제 불가 시 당해 연도 수출 제외
- 라. 수확상자에 참여농가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 가. 선과장의 관리자는 배 생과실의 포장일자, 수출검역희망일자, 컨테이너 선적 또는 반출일자 등에 대해 수출검역 전 관할 지역 본부장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
- 나. 포장상자에는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For Argentina”가 표시되어야 함



다. 수출검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 각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샘플을 채취하여 실시

라. 수출검역증명서 부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①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 ② Container seal number(컨테이너 봉인번호)
- ③ “The consignment meets the requirements agreed in the Work plan for the export of fruit of *Pyrus pyrifolia*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Argentina and is free from Argentina’s pests of concerns (in Annex 1).” (동 화물은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을 위한 워크플랜에 합의한 요건을 준수하며, 별표 1 아르헨티나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 4 기 타

가. 수출 첫 해에는 아르헨티나 SENASA/DNPV 검역관과 합동으로 수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함  
(수출 개시 60일 전 초청 필요)

나. 한국산 배는 Buenos Aires 항구와 Ministro Pistarini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아르헨티나로 수입 가능함

## 5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병(4종)〉

#### ✓ 진균(4)

*Alternaria kikuchiana*(배나무검은무늬병)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겉무늬병)

*Gymnosporangium asiaticum*(붉은별무늬병)

*Monilinia fructigena*(잼빛무늬병)



## 〈해충(23종)〉

## ✓ 응애(2)

*Tetranychus viennensis* (벚나무응애)*Tetranychus kanazawai* (차응애)

## ✓ 딱정벌레목(1)

*Rhynchites heros*(복숭아거위벌레)

## ✓ 나비목(9)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Archips breviplicanus* (사과무늬잎말이나방)*Archips fuscocupreanus* (검모무늬잎말이나방)*Carposina sasakii*(=*C. niponensis*) (복숭아심식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 (복숭아명나방)*Ectomyelois pyrivorella* (배명나방)*Othreis fullonia* (애으름밤나방)*Pandemis heparana* (갈색잎말이나방)*Sponota ocellana* (사과흰애기잎말이나방)

## ✓ 노린재목(11)

*Aphanostigma iakusuiense* (콩가루벌레)*Ceroplastes japonicus* (거북밀깍지벌레)*Ceroplastes rubens* (루비깍지벌레)*Crisicoccus matsumotoi* (버들가루깍지벌레)*Diaspidiotus ostreaeformis* (닭은조개깍지벌레)*Dysmicoccus wistariae* (등나무가루깍지벌레)*Lepidosaphes conchiformioides* (배나무굴깍지벌레)*Lopholeucaspis japonica* (배나무흰깍지벌레)*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깍지벌레)*Pseudaonidia duplex* (조개깍지벌레)*Psylla pyrisuga* (배나무이)

# 브라질

## part 08



### Ⅰ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과수원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1 수출단지 요건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출 선과장에 선과 감독 기록부 비치

나. 생산자조직 대표는 매년 4월 30일 까지 수출단지를 지정 신청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가. 봉지를 씌워 재배해야함(5~6월 봉지 씌우기, 검역본부 확인)

나. 참여농가는 브라질 우려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및 관리

-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농촌진흥청)에 따라 적절한 약제 방제 실시
- 병해충 관리 상황을 기록·보관
- 참여농가는 재배지 예찰에서 브라질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검역본부에 통보

다. 단지 대표자는 재배기간 중 재배지 검역을 신청하여야 함

-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재배지 검역 2회(재배 중, 수확 전 10일~20일 사이) 실시
- 브라질 우려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방제 조치, 방제 불가 시 당해 연도 수출 제외
- 잣빛무늬병, 붉은별무늬병, *Gymnosporangium sabinae* 검출 시, 검은무늬병 감염율이 0.5% 초과한 경우 당해 연도 수출 제외

라. 수확상자에 참여농가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3

##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가. 선과장의 관리자는 배 생과실의 포장일자, 수출검역희망일자, 컨테이너 선적 또는 반출일자 등에 대해 수출검역 전 관할 지역 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

나. 포장상자에는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To Brazil”가 표시되어야 함

|                                                |
|------------------------------------------------|
| Packinghouse Code<br>Orchard Code<br>To Brazil |
|------------------------------------------------|

다. 수출검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 각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샘플을 채취하여 실시

라. 수출검역증명서 부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①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 ② Container seal number(컨테이너 봉인번호)
- ③ “This consignment was officially supervised and considered application of Integrated Pest Management System agreed by Brazil, and is free from *Amphitetranychus viennensis*, *Tetranychus kanzawai*, *Tetranychus truncatus*, *Crisicoccus matsumotoi*, *Planococcus kraunhiae*, *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dimorpha*, *Spilonota albicana*, *Spilonota ocellana*, *Alternaria gaisen*,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Gymnosporangium sabinae*, *Monilinia fructigena*.”

(본 화물은 공식적으로 감독하고 브라질과 합의한 종합적 병해충위험관리시스템 적용을 고려하였으며, *Amphitetranychus viennensis*, *Tetranychus kanzawai*, *Tetranychus truncatus*, *Crisicoccus matsumotoi*, *Planococcus kraunhiae*, *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dimorpha*, *Spilonota albicana*, *Spilonota ocellana*, *Alternaria gaisen*,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Gymnosporangium sabinae*, *Monilinia fructigena*에 감염되지 않았음)

## 4 기 타

- 가. 브라질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검역로트는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 농가는 당해 시즌 동안 수출 제외
- 나. 우려병해충 검출로 불합격된 경우 이미 합격되어 수출선과장에 저장되어 있는 해당 농가산 배는 수출할 수 없음
- 다. 브라질 수입검역에서 흙, 잎, 식물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됨

## 5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해충 12종〉

- Amphitetranychus viennensis* (벚나무응애)
- Tetranychus kanzawai* (차응애)
- Tetranychus truncatus* (뽕나무응애)
- Crisicoccus matsumotoi* (버들가루깍지벌레)
- 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깍지벌레)
- Acrobasis pyrivorella* (배명나방)
-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 Carposina sasakii* (복숭아심식나방)
- Conogethes punctiferalis* (복숭아명나방)
- Grapholita dimorpha* (복숭아순나방붙이)
- Spilonota albicana* (사과속애기잎말이나방)
- Spilonota ocellana* (사과흰애기잎말이나방)

### 〈병 5종〉

- Alternaria gaisen* (검은무늬병)
-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겉무늬병)
- Monilinia fructigena* (잿빛무늬병)
- Gymnosporangium asiaticum* (붉은별무늬병)
- Gymnosporangium sabinae* (European pear rust)

# 칠 레

## part 09



### Ⅰ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과수원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1 수출단지 요건

-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 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출선과장에 선과 감독 기록부 비치
- 나. 생산자조직 대표는 매년 4월30일 까지 수출단지를 지정 신청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봉지를 씌워 재배해야함(5~6월 봉지 씌우기, 검역본부 확인)
- 나. 참여농가는 칠레 우려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및 관리
- 다. 단지 대표자는 재배기간 중 재배지 검역을 신청하여야 함
  -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재배지 검역 실시
  - 칠레 우려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방제 조치, 방제 불가 시 당해 연도 수출 제외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 가. 선과장의 관리자는 배 생과실의 포장일자, 수출검역희망일자, 컨테이너 선적 또는 반출일자 등에 대해 수출검역 전 관할 지역 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
- 나. 포장상자에는 품종명, 수출자 성명(또는 코드번호), 참여농가 및 원산지명(코드번호), 포장일자, “칠레 수출용”이 표시되어야 함

다. 수출검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 수출화물의 최소 1%에 해당하는 샘플을 채취하여 실시

라. 수출검역증명서 부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①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 ② Container seal number(컨테이너 봉인번호)
- ③ “This is to certify that pear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Anthonomus pomorum*, *Carposina sasaki*, *Dichodrosia punctiferalis*, *Ectomyelois pyrivorella*, *Rhynchites heros* and they have been grown in the designated export area.  
(“이 화물은 대철레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결과 배꽃바구미·복숭아거위벌레·복숭아심식나방·복숭아명나방·배명나방에 감염되지 아니하였음.”)

#### 4

####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           |
|------------------------------------|-----------|
| 1. <i>Adoxophyes orana</i>         | 애모무늬잎말이나방 |
| 2. <i>Adris tyrannus amurensis</i> | 으름밤나방     |
| 3. <i>Amphipyra pyramidea</i>      | 줄먹밤나방     |
| 4. <i>Anthonomus pomorum</i>       | 배꽃바구미     |
| 5. <i>Aphanostigma iakusuiense</i> | 콩가루벌레     |
| 6. <i>Archippus breviplicanus</i>  | 사과무늬잎말이나방 |
| 7. <i>Archippus ingentanus</i>     | 왕사과잎말이나방  |
| 8. <i>Archips asiaticus</i>        | 뽕날개잎말이나방  |
| 9. <i>Archips crataeganus</i>      | 뽕무늬잎말이나방  |
| 10. <i>Archips fuscocupreanus</i>  | 검모무늬잎말이나방 |
| 11. <i>Archips nigricandanus</i>   | 흰꼬리잎말이나방  |
| 12. <i>Archips xylosteanus</i>     | 모무늬잎말이나방  |
| 13. <i>Arcte coerulea</i>          | 암청색줄무늬밤나방 |
| 14. <i>Axylia putris</i>           | 썩은밤나방     |
| 15. <i>Calyptra gruesa</i>         | 큰우묵밤나방    |
| 16. <i>Calyptra thalictri</i>      | 칼페우묵밤나방   |
| 17. <i>Carposina sasakii</i>       | 복숭아심식나방   |

|                                                  |           |
|--------------------------------------------------|-----------|
| 18. <i>Catocala actaea</i>                       | 꼬마뒤흰나방    |
| 19. <i>Catocala agitatatrix</i>                  | 젯빛노랑뒷날개나방 |
| 20. <i>Catocala fulminea</i>                     | 번개뒷노랑밤나방  |
| 21. <i>Cosmia exigua</i>                         | 주먹무늬밤나방   |
| 22. <i>Dysmicoccus wistariae</i>                 | 등나무가루깍지벌레 |
| 23. <i>Endoclyta excrescens</i>                  | 박쥐나방      |
| 24. <i>Halymorpha halys</i> (= <i>H. mista</i> ) | 씩덩나무노린재   |
| 25. <i>Hoshinoa longicellana</i>                 | 사과잎말이나방   |
| 26. <i>Hyboma strigosa</i>                       | 벗나무칼무늬나방  |
| 27. <i>Lagoptera juno</i>                        | 무궁화밤나방    |
| 28. <i>Oraesia emarginata</i>                    | 작은갈고리밤나방  |
| 29. <i>Oraesia excavata</i>                      | 갈고리밤나방    |
| 30. <i>Othreis fullonica</i>                     | 애으름밤나방    |
| 31. <i>Oxycetonia jucunda</i>                    | 애초록꽃무지    |
| 32. <i>Pandemis cinnamomeana</i>                 | 흰머리잎말이나방  |
| 33. <i>Pandemis dumetana</i>                     | 자두갈색잎말이나방 |
| 34. <i>Pandemis heparana</i>                     | 갈색잎말이나방   |
| 35. <i>Pandemis serasana</i>                     | 벗갈색잎말이나방  |
| 36. <i>Planococcus kraunhiae</i>                 | 온실가루깍지벌레  |
| 37. <i>Pseudaulacaspis pentagona</i>             | 뽕나무깍지벌레   |
| 38. <i>Pseudococcus comstocki</i>                | 가루깍지벌레    |
| 39. <i>Ptycholoma lecheana</i>                   | 감나무잎말이나방  |
| 40. <i>Ptycholomoides imatador</i>               | 아미타잎말이나방  |
| 41. <i>Serrodus campana</i>                      | 왕잎밤나방     |
| 42. <i>Spilonota lechriaspis</i>                 | 사과순나방     |
| 43. <i>Tetranychus kanzawai</i>                  | 간자와응애     |
| 44. <i>Tetranychus viennensis</i>                | 벗나무응애     |
| 45. <i>Tortrix sinapina</i>                      | 그물노랑잎말이나방 |
| 46. <i>Venturia nashicola</i>                    | 검은별무늬병    |



## 페 루

### part 10

#### Ⅰ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과수원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1 수출단지 요건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출선과장에 선과 감독 기록부 비치

나. 생산자조직 대표는 매년 4월 30일 까지 수출단지를 지정 신청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가. 봉지를 씌워 재배해야함(5~6월 봉지 씌우기, 검역본부 확인)

나. 단지 대표자는 재배기간 중 재배지 검역을 신청하여야 함

-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재배지 검역(재배 중) 실시
- 페루 우려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방제 조치, 방제 불가 시 당해 연도 수출 제외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가. 선과장의 관리자는 배 생과실의 포장일자, 수출검역희망일자, 컨테이너 선적 또는 반출일자 등에 대해 수출검역 전 관할 지역 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

나. 포장상자에는 참여농가번호,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To Peru”가 표시되어야 함



다. 수출검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 각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샘플을 채취하여 실시

라. 수출검역증명서 부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① 참여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 ② Container seal number(컨테이너 봉인번호)
- ③ “Fresh pears come from fields and packinghouses registered by APQA-Korea”  
(배 생과실은 한국 APQA에 등록된 재배지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었음)
- ④ “Fresh pears come from fields and packinghouses registered by APQA-Korea”  
(배 생과실은 한국 APQA에 등록된 재배지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었음)

#### 4 기 타

페루 수입자는 APQA 수출검역 이전에 SENASA로부터 수입허가서를 취득하여야 함

#### 5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 해충 〉

*Carposina sasakii* (복숭아심식나방)

*Conogethes punctiferalis* (복숭아명나방)

*Grapholita molesta* (복숭아순나방)

*Lopholeucaspis japonica* (배나무흰깍지벌레)

*Pseudococcus comstocki* (가루깍지벌레)

##### 〈 병원균 〉

*Botryosphaeria dothidea* (겉무늬병)

*Monilia fructigena* (젯빛무늬병)

*Nectria galligena* (흑병)



# 인도

## part 11

### Ⅰ 최근 변경 사항

- 수출선과장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1 수출단지 요건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나. 저온처리를 위한 수출단지 요건

- 저온처리(수송 중 처리 할 경우 선적) 개시 7일 전까지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신청
  - 온도감지기가 설치되고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을 것
  - 0.0℃ 이하로 40일간 저온처리가 가능한 시설로서 저온처리 업무를 담당할 책임자 1인 이상이 지정되어있을 것

### 2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가. 수확후 관리

- 저온처리 후 30일 이상 장기 저장한 배에 대하여 재고잔량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저장된 배의 수량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
- 저온처리 된 생과실은 저온처리시설 또는 보관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할 때에는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수출검역증명서 부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검역 후 합격된 화물은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

1. “이 화물의 과실은 인도 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was found free from *Aculus schlech tendali*,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Grapholita molesta*, *Harmonia axyridis*, *Metcalfa pruinosa*, *Peridroma saucia* and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yricola*.”

## 2. 저온처리사항

〈선적전 육상에서 저온처리된 생과실〉

“이 화물의 과실은 0.0℃ 이하에서 40일간 저온처리 되었음”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was cold-treated at a temperature of 0.0℃ or below for 40 days in the pre-shipment.”

〈수송 중 저온처리 될 생과실〉

“이 화물은 0.0℃ 이하에서 40일간 저온처리 될 것임”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shall be cold-treated at a temperature of 0.0℃ or below for 40 days in transit.”

- 항공화물인 경우, 식물검역관은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전체를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그물망(그물 간격 1.6mm 이하의 망)이나 비닐로 포장하고 봉인할 수 있다.

## 3

##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1. *Aculus schlechtendali* (흑응애 일종)
2.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3. *Carposina sasakii* (복숭아심식나방)
4. *Grapholita molesta* (복숭아순나방)
5. *Harmonia axyridis*(무당벌레)
6. *Metcalfa pruinosa* (미국선녀벌레)
7. *Peridroma saucia* (뒷흰날개밤나방)
8.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yricola* (곶무늬병)



## 대만 [사과 포함]

### part 12

#### ■ 최근 변경 사항

-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라 고시 개정

#### 1 수출단지 요건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 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선과장 내부에 최소 2개의 비(非)페로몬 트랩을 설치하고 선과기간 중에는 매일 복숭아 심식나방 발생유무를 조사하여 예찰기록 대장에 따라 기록보관
-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시 APQA에게 즉시 통보
- APQA는 복숭아심식나방이 검출된 사실을 수출단지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원인이 밝혀지고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선과작업을 중단시키고 이를 BAPHIQ에 통보

나. 수출단지 대표는 매년 4월 30일 까지 수출단지를 지정 신청

다. 승인된 수출단지 시설이 보완되거나 선과장을 신축한 경우 추가로 승인 신청서를 제출

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과장을 승인 취소할 수 있으며, 승인 취소된 수출단지는 당해연도 수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다음해 수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여 확인 결과 승인취소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에 참여 가능

- ① 수출검역단지 요건에 미비하여 일정 기간 개선 요구에 불이행한 경우
- ② 선과장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부정·불법수출에 관련된 경우
- ③ 수출선과장에서 다음의 요건 위반 사항이 식물검역관에게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ㄱ. 선과기간 중 선과장 내 복숭아심식나방 발생유무를 조사 미 실시
  - ㄴ. 수출용 배 생과실의 선과장 반입요건 위반
  - ㄷ. 대만 수출용 과실과 내수용 또는 다른 국가 수출용 과실을 동시에 선과 및 포장을 하거나 격리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
  - ㄹ. 선과계획서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 ㅁ. 선과장에 예찰, 방제 및 재배지검역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ㅂ. 과실상자를 저장창고까지 운송시 1.6mm 이하의 방충망 또는 천막 또는 비닐 등으로 덮지 않고 이송한 경우
- ④ 수출용 포장상자에 대한 표기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⑤ 대만의 수입검역과정에서 잔류농약허용기준을 4회 이상 위반하여 안전성관리기관이 취소를 요청한 선과장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해당 재배지에서 재배기간 중 복숭아심식나방에 대한 방제 철저 실시
- 나. 지자체는 관할지역내 참여농가가 RDA의 병해충방제력 및 수출농산물 농약 안전사용가이드에 따라 방제하도록 지도·감독, APQA는 한국을 방문한 대만검역관에게 병해충 방제력 제공
- 다. 배 참여농가는 과실의 지름이 2.5cm 이하 때까지 봉지를 씌워 재배
- 라. APQA 및 BAPHIQ 식물검역관은 대만 수출 과수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봉지씌우기 재배, 예찰 및 방제, 예찰과 방제사항 기록 등 복숭아심식나방 관리상황을 확인

### 〈사과·복숭아〉

1. 지자체는 참여농가 등록 및 수출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해 참여농가 대표, 수출업체, 수출단지 대표 및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관계자 등으로 수출협의체를 구성·운영
2.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 희망농가를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제2호서식 대만 수출참여농가 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
3. 지자체는 수출단지에서 제출한 희망농가에 대해 수출협의체 협의를 거쳐 참여농가를 확정하고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와 지역본부·사무소장에 통보
4.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업체 및 수출 참여농가와 협의하여 사과는 수확 15일전, 복숭아는 수확 10일전에 재배지검역을 신청
5. 사과 및 복숭아 재배지에 대한 복숭아심식나방 예찰 요령에 따라 예찰 실시
  - 5월 31일까지 예찰트랩 설치하여 6월 상순부터 10월 하순까지 2주 간격 조사 등
6. 재배지검역요령에 따라 재배지 검역 실시
  - 재배지별로 X자 방향으로 재배지검역 진행, 1ha 이하일 경우 10주, 주당 20과(무작위), 총 200개 과실 표본추출 등

### 〈배〉

1. 배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참여농가 목록을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한국을 방문하는 BAPHIQ 식물검역관에게 제공

### 〈공통〉

1. 수출 참여농가 목록 제출 이후 최근 2년간 대만 수출에 참여하지 않거나 APQA에서 실시하는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를 제외. 다만, 수출단지 대표자는 신규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한 참여농가 목록을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만수출계획서 제출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 〈선과 · 포장〉

1.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APQA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선과 전문가 1명 이상을 선과 과정에 배치하여 복숭아심식나방 감염 혐의가 있는 과실을 선별
2.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 사이에 수출 참여농가의 배 봉지 제거작업을 선과전문가가 확인한 경우에는 봉지가 제거된 배 생과실이 선과장으로 반입
  - 봉지가 제거된 배는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선과전문가는 배 봉지 제거상황을 배봉지 제거상황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선과장에 비치
3. 수출단지 대표자는 대만 수출용 생과실 선과 및 포장작업은 내수용 또는 대만 이외의 국가 수출용 과실과 동시에 실시되지 않아야 하며, 일몰 후에는 관련 작업 중단 조치
4. APQA 식물검역관은 선과 및 포장과정을 감독
5.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약안전성 관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농약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거나 대만의 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가의 과실에 대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6. 수출용 포장상자에는 과실명, 선과장 이름 또는 선과장 코드번호가 표기
7. 포장상자에 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1.6mm 이하의 망으로 차단하거나 밀폐된 운송 수단을 사용하여 수송
8.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검역에 합격한 과실의 재감염 방지 조치
  - 과실 상자 야적금지 및 과실 노출금지, 저온 저장창고 또는 밀폐된 저장창고까지 운송 하는 때에는 1.6mm 이하의 방충망 또는 천막 또는 비닐 등으로 완전 피복

#### 〈수출 검역〉

1. 수출검역은 BAPHIQ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 초청 서신 발송 후 개시.
2. APQA 식물검역관은 선과과정 중 복숭아심식나방 등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을 철저히 선별하여 매일 폐기하도록 선과장을 감독
3. 수출검역 중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 해당 건은 불합격 처리, 해당 재배지에서 해당 연도에 대만 수출 금지. 다만, 복숭아심식나방 이외 살아있는 나비목 유충이 발견된 경우는 해당 건만 불합격 처리
  -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조치, 해당 수출단지에서 포장된 과실의 대만 수출 중단, BAPHIQ에 상황 통보

4.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경우, 다음을 부기하여 증명서 발급  
 “동 과실의 검역결과 복숭아심식나방과 BAPHIQ에 의해 지정된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음.  
 선과장 코드번호 : 품목명-지역본부 또는 사무소 코드번호-수출단지일련번호-선과장일련번호,  
 검역일자 : 월, 일, 년”  
 “The fruits have been thoroughly inspected and found free of peach fruit moth and other quarantine pests designated by BAPHIQ.  
 Code No. of Packing House : The kind of fruit-○○-○○-○○,  
 Date of Inspection : month, day, year”
5. 검역합격 후 14일 이내에 수출되지 않은 화물의 경우에는 APQA 식물검역관의 재검역을 받은 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수출될 수 있음

## 4 기 타

### □ 포장 완료된 과실의 이송 후 수출

- 수출검역은 최종 수출 선과장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선과장별 코드번호와 포장수량을 표기

### □ 대만의 수입검역

- “대만 식물보호 및 검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름
- 수출식물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증명서에 부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포장 상자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화물은 대만으로 수입될 수 없음
-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화물은 반송 또는 폐기 처리
- BAPHIQ는 수입검역 과정에서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경우에는 APQA에 즉시 통보  
 - 통보 시에는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된 포장상자에 관한 모든 정보 및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수출식물검역증명서의 사본, 해충 사진 및 감정보고서 등 관련 자료 포함

### □ 수출중단 및 재개

- 대만의 수입검역과정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견되었다는 통지를 BAPHIQ로부터 과실이 생산된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 중에 1회 받으면 지체없이 동일 과종의 수출 검역 중단 조치
- 중단 조치일 이전에 수출식물검역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중단 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적되면 대만으로 수출될 수 있음
- APQA는 수출중단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원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한 후 BAPHIQ에 조사결과 통보.

- APQA는 조사결과 수출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BAPHIQ에 시스템 개선방안 제시, BAPHIQ는 시스템 개선조치 사항 확인을 위하여 식물 검역관을 한국에 파견할 수 있으며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
- 수출중단 조치는 APQA 통보 내용에 대하여 BAPHIQ의 검토와 동의 또는 이와 함께 BAPHIQ 식물검역관이 한국측에서 요건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검토와 동의를 한 후에 해제
- APQA는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 발견 통지를 과실이 생산된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중에 2회 받은 경우에는 복숭아심식나방의 모든 기주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지체없이 중단 조치

#### □ 현지조사

- 매년 현지조사 1개월 전, APQA는 BAPHIQ에 대만검역관 파견 요청
- 초청 서신에는 선과장 목록이 포함. 또한 수출시즌 중 신규로 등록된 선과장이 있는 경우 APQA는 추가된 선과장목록을 BAPHIQ에 제공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BAPHIQ에서 파견한 검역관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아래의 경우 APQA에서 BAPHIQ 대신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1. 전년도에 BAPHIQ가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던 동일한 품목
  2. 지난 시즌 수출 및 수입 검역과정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검출되지 않았고 대만의 금지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던 품목
- APQA에서 BAPHIQ 대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BAPHIQ에 제공
- 대만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 비용은 한국측이 부담
- 수출단지 대표자는 아래 기록 보관 및 BAPHIQ 식물검역관의 현지 조사시 제공
  1. 전담 지도사의 사과 및 복숭아 재배지 예찰기록부 사본
  2. 참여농가별 복숭아심식나방 방제기록부 사본
  3. (사과, 복숭아) 참여농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
  4. (사과·배·복숭아) 참여농가 목록
  5. 대만 수출검역단지 지정서
  6. 선과전문가 교육수료증
  7. 대만 수출 단지 내 복숭아심식나방 예찰기록대장
  8. 배봉지 제거상황 기록 대장



## 5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Carposina sasakii* (복숭아심식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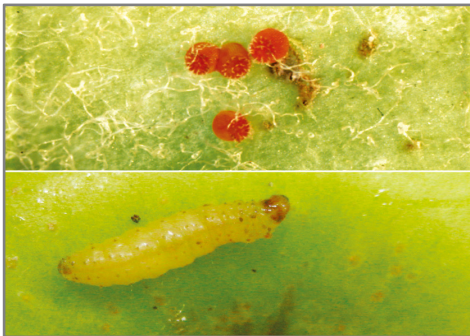
### 복숭아심식나방의 피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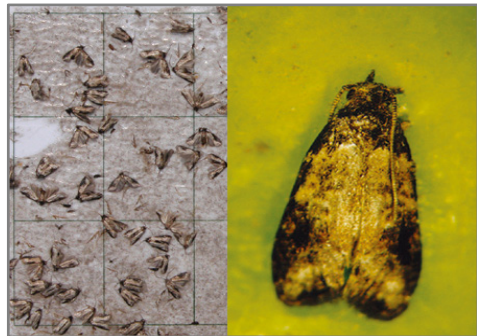
복숭아심식나방 피해과



복숭아심식나방 피해과 낙과상태



복숭아심식나방 유충



복숭아심식나방 성충



## II. 「사과」 생과실 수출검역요건





# 미 국

## part 01



### 1 수출단지 요건

- 가. 수출선과장은 대미 사과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 동식물검역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나. 수출선과장은 7월 초까지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위치가 표시된 지도(1/25000), 수출과수원 목록, 각 수출과수원의 면적, 선과장·저장시설·소독처리시설 약도를 미 동식물검역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다. 소독처리시설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독처리시설 설계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 동식물검역원에 소독처리시설 및 소독장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라. 수출선과장 및 소독처리시설이 과거에 승인을 받았지만 프로그램 참여가 중단되거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의 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미 동식물검역원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함.
- 리. 승인된 수출선과장 및 소독처리시설은 매년 7월까지 변동사항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대미 수출용 선과장 대표자는 매년 9월말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수확 전 재배지 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 나.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재배자별로 코드번호(각각의 과수원을 구별하기 위한 일련번호 추가)를 부여하고, 식물검역관은 수확 전에 병해충 발생 상태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
- 전년도 수출에서 제외된 과수원과 등록 과수원의 약 1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역

- 수출지역의 전체 경계선 및 경계선 내부지역을 철저히 검역
- 검역대상 과수는 각 검역단위의 모든 구역으로부터 균등히 선발

다. 재배자가 과수원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당해 재배자는 당해년도 남은 수출기간 동안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신청자에게 불합격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라. 재배지 검역에서 잣빛무늬병 및/또는 적성병의 증상이나 표징이 발견될 경우, 당해 과수원은 불합격 처리되어야 하며, 당해 수출기간동안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가. 선과장 대표는 매년 수출 선과 30일 전까지 선과장, 저장시설 및 소독처리시설을 점검·보완한 후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각 선과장 대표는 매년 수출 선과 30일 전까지 선과책임자 2명 이상의 이름, 직책, 연락처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선과장 대표는 선과 시작 1주일 전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농가별 선과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과계획서는 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 예정량 및 저온처리 및 MB 훈증 일자, 검역 희망일, 선과책임자의 이름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포자상자 표시사항

USDA-APHIS

Preclearance Program(사전검역프로그램)

Treatment Facility Number(처리시설번호) \_\_\_\_\_

Packing house Number(선과장번호) \_\_\_\_\_

Grower Number(농가코드번호) \_\_\_\_\_

마. 선과책임자는 각 검역단위별로 포장이 완료된 상자에서 최소 과실 149개의 대표샘플 채취하여 한·미 합동검역

## 4 기 타

- 가.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선정된 수출선과장이 “대미 사과실 수출단지 취소요건”에 대해당되어 수출선과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출선과장의 승인 취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사무소장의 취소요청에 따라 위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출선과장을 취소한 경우 해당 선과장 대표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라. 승인이 취소된 수출선과장은 당해연도 수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다음해 수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승인취소 사유가 소멸된 상태에서 재승인 되어야 함
- 마. 소독처리 지침은 다음과 같음

### ▣ 저온 소독처리 (나방류의 알 소독 및 MB 약해방지)

- 가. 사과는 미 동식물검역원의 승인을 받은 저온처리시설을 사용하여 과육온도 1.1℃ (화씨 34도) 이하에서 최소 40일간 저온처리 되어야 함.
- 나. 각 저온처리실의 온도는  $\pm 0.6^{\circ}\text{C}$ 의 정확도로 1.1℃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되어야 함
  - 미 동식물검역원이 훈증 전 저온처리가 적절히,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최종 판정
  - 저온창고에 보관되는 대미 수출용 사과 상자는 “For U.S.” 표시 또는 꼬리표 부착

### ▣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 (나방류 유충 및 외부 가해해충 소독)

미 동식물검역원의 승인을 받은 상압훈증창고 또는 천막 하에서 미검역관의 직접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5

##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사과의 경우)

- *Monilinia fructigena* - 과수균핵병
  - *Gymnosporangium yamadae*(Rust) - 붉은별무늬병
  - *Carposina sasakii*(Peach fruit moth) - 복숭아심식나방
  - *Conogethes(Dichocrocis) punctiferalis*(Yellow peach moth) - 복숭아명나방
  - *Grapholita molesta*(Oriental fruit moth) - 복숭아순나방(British Columbia주에서만 규제)
  - *Tetranychus truncatus* - 뽕특응애
  - *Amphitetranychus viennensis*(Hawthorn spider mite) - 뽕나무응애
- ※ 상기 병해충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사과에서 가장 발견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간주되는 검역병해충 목록이며, 이 목록에 모든 검역병해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님.

## (배의 경우)

- *Alternaria kikuchiana*(Black spot) - 검은무늬병
- *Monilinia(Sclerotinia) fructigena*(Brown rot) - 잿빛무늬병
- *Carposina sasakii*(Peach fruit moth) - 복숭아심식나방
- *Conogethes(Dichocrocis) punctiferalis*(Yellow peach moth) - 복숭아명나방
- *Grapholita molesta*(Oriental fruit moth) - 복숭아순나방(British Columbia주에서만 규제)
- *Numonia pirivorella*(Pear fruitworm) - 배명나방
- *Tetranychus truncatus* - 뽕특응애
- *Amphitetranychus viennensis*(Hawthorn spider mite) - 뽕나무응애





■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과수원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참여농가는 GAP를 이행하여야 함

1 수출단지 요건

-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출선과장은 표준작업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 비치
- 나.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 선과 개시 30일 전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

2 재배지 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참여농가 준수사항
- 병해충종합관리(IPM) 또는 태국측 우려병해충 관리를 위한 방제활동 실시
  - 농산물우수관리(GAP) 이행
  - 방제기록부 기록 및 보관
- 나.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선과 20일전까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승인서 사본과 함께 참여농가 목록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 가. 각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함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Product or produce of Korea</li> <li>2. Name of exporting company</li> <li>3. Name of fruit</li> <li>4. Packinghouse code (PHC)</li> <li>5. Production unit code (PUC)</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산 상품 또는 농산물</li> <li>2. 수출 업체명</li> <li>3. 과실 명</li> <li>4. 선과장 등록 번호</li> <li>5. 참여농가 등록 번호</li> </ol> |
| 〈 영문 표기 사항 〉                                                                                                                                                                                                                | 〈 국문 번역 〉                                                                                                                                           |

나. 생과실이 개별 상자에 포장되어 수출되는 경우, 각 포장상자 마다 “EXPORT TO THAILAND”(태국 수출용)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 부착

- 포장상자가 화물용 컨테이너에 팰릿(pallet)으로 적재되어 수출되는 경우, 팰릿(pallet)의 4면에 동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다. 수출검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 각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 샘플을 채취하여 실시
- 수출검역 결과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 하여야함 (단, 소독 방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 검역될 수 있음)

라. 수출검역증명서 부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The consignment of (품목명) frui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import of (품목명) from Korea to Thailand.”(“동 (품목명) 생과실 화물은 한국산 (품목명) 생과실의 태국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준비되었음.”)
-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 화물만 해당)

## 4 기 타

가. 해당 화물이 태국 수입지에 도착하면 DO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수입 검역 실시

나. 화물에 대한 샘플은 DOA 식물검역관 재량에 따라 임의로 채취되며, 살아있는 병해충 검출시 분류동정 실시 (해당 화물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 보류)

다. 1,000개 미만의 과실 화물의 경우 450개 또는 화물의 100%를 검사(1,000개 이상의 과실 화물의 경우 600개에 대하여 샘플 검사 실시)

## 5

##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병(종)                                                                                                                                                                                                                                                                                                                                                                                                                                                                                                                                                                                                                                                                                                                                                                                                                                                                                                                                                                                                                                                            | 해충(종)                                                                                                                                                                                                                                                                                                                                                                                                                                                                                                                                                                                                                                                                                                                                                                                                                                                                                                                                                                                                                                                                                                                                                                                             |
|-----------------------------------------------------------------------------------------------------------------------------------------------------------------------------------------------------------------------------------------------------------------------------------------------------------------------------------------------------------------------------------------------------------------------------------------------------------------------------------------------------------------------------------------------------------------------------------------------------------------------------------------------------------------------------------------------------------------------------------------------------------------------------------------------------------------------------------------------------------------------------------------------------------------------------------------------------------------------------------------------------------------------------------------------------------------|---------------------------------------------------------------------------------------------------------------------------------------------------------------------------------------------------------------------------------------------------------------------------------------------------------------------------------------------------------------------------------------------------------------------------------------------------------------------------------------------------------------------------------------------------------------------------------------------------------------------------------------------------------------------------------------------------------------------------------------------------------------------------------------------------------------------------------------------------------------------------------------------------------------------------------------------------------------------------------------------------------------------------------------------------------------------------------------------------------------------------------------------------------------------------------------------------|
| <p>✓ 진균(23)</p> <p><i>Alternaria mali</i> (점무늬낙엽병)</p> <p><i>Botryosphaeria obtusa</i> (검은썩음병)</p> <p><i>Chondrostereum purpureum</i> (은엽병)</p> <p><i>Diaporthe eres</i> (줄기마름병)</p> <p><i>Diaporthe tanakae</i></p> <p><i>Gibberella baccata</i> (가지마름병)</p> <p><i>Gymnosporangium globosum</i> (붉은별무늬병)</p> <p><i>Gymnosporangium yamadae</i> (붉은별무늬병)</p> <p><i>Monilinia fructicola</i> (잣빛무늬병)</p> <p><i>Monilinia fructigena</i> (잣빛무늬병)</p> <p><i>Monilinia laxa</i> (잣빛무늬병)</p> <p><i>Mycosphaerella pomi</i> (열매점무늬병)</p> <p><i>Neonectria ditissima</i></p> <p><i>Phyllachora pomigena</i> (그을음병)</p> <p><i>Phytophthora cambivora</i> (역병)</p> <p><i>Phytophthora cryptogea</i> (역병)</p> <p><i>Phytophthora syringae</i> (역병)</p> <p><i>Podosphaera clandestina</i> (흰가루병)</p> <p><i>Schizothyrium pomi</i> (그을음점무늬병)</p> <p><i>Truncatella hartigii</i></p> <p><i>Venturia carpophila</i> (갈색녹무늬병)</p> <p><i>Venturia inaequalis</i> (검은별무늬병)</p> <p><i>Venturia pyrina</i> (검은별무늬병)</p> <p>✓ 세균(1)</p> <p><i>Pseudomonas cichorii</i> (세균성썩음병)</p> | <p>✓ 응애(3)</p> <p><i>Aculus schlechtendali</i> (사과녹응애)</p> <p><i>Amphitetranychus viennensis</i> (벚나무응애)</p> <p><i>Panonychus ulmi</i> (사과응애)</p> <p>✓ 딱정벌레목(2)</p> <p><i>Rhynchites heros</i> (복숭아가위벌레)</p> <p><i>Byturus tomentosus</i> (숨털꾸시기붙이)</p> <p>✓ 노린재목(6)</p> <p><i>Eriosoma lanigerum</i> (사과면충)</p> <p><i>Lepidosaphes ulmi</i> (사과굴각지벌레)</p> <p><i>Lopholeucaspis japonica</i> (배나무흰각지벌레)</p> <p><i>Pseudaonidia duplex</i> (조개각지벌레)</p> <p><i>Pseudaulacaspis pentagona</i> (뽕나무각지벌레)</p> <p><i>Phenacoccus aceris</i> (긴숨각지벌레붙이)</p> <p>✓ 나비목(10)</p> <p><i>Carposina sasakii</i> (복숭아심식나방)</p> <p><b><i>Euzophera bigella</i></b> (= <i>Glyptoteles leucacrinella</i>)<br/>(쌍무늬알락명나방)</p> <p><i>Ostrinia scapulalis</i> (콩줄기명나방)</p> <p><i>Adoxophyes orana</i> (애모무늬잎말이나방)</p> <p><i>Grapholita dimorpha</i> (복숭아순나방붙이)</p> <p><i>Grapholita molesta</i> (복숭아순나방)</p> <p><i>Pandemis heparana</i> (갈색잎말이나방)</p> <p><i>Spilonota albicana</i> (사과속애기잎말이나방)</p> <p><i>Spilonota ocellana</i> (사과흰애기잎말이나방)</p> <p><i>Argyresthia conjugella</i> (사과좁나방)</p> <p>✓ 총채벌레목(2)</p> <p><i>Ponticulothrips diospyrosi</i> (감관총채벌레)</p> <p><i>Taeniothrips inconsequens</i> (터덕어리총채벌레)</p> |

## 칠 레

### part 03



#### ■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과수원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1 수출단지 요건

-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출선과장에 선과 감독 기록부 비치
- 나. 생산자조직 대표는 매년 4월30일 까지 수출단지를 지정 신청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봉지를 씌워 재배해야함(5~6월 봉지 씌우기, 검역본부 확인)
- 나. 참여농가는 칠레 우려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및 관리
- 다. 단지 대표자는 재배기간 중 재배지 검역을 신청하여야 함
  -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재배지 검역(재배 중) 실시
  - 칠레 우려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방제 조치, 방제 불가 시 당해 연도 수출 제외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 가. 선과장의 관리자는 배 생과실의 포장일자, 수출검역희망일자, 컨테이너 선적 또는 반출일자 등에 대해 수출검역 전 관할 지역 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
- 나. 포장상자에는 품종명, 수출자 성명(또는 코드번호), 참여농가 및 원산지명(코드번호), 포장일자, “칠레 수출용”이 표시되어야 함

다. 수출검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 수출화물의 1%에 해당하는 샘플을 채취하여 실시

라. 수출검역증명서 부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①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 ② Container seal number(컨테이너 봉인번호)
- ③ “This is to certify that apples co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Anthonomus pomorum*, *Carposina sasaki*, *Dichodrosia punctiferalis*, *Ectomyelois pyrivorella*, *Rhynchites heros*, *Rhynchites foreipennis* and they have been grown in the designated export area.”

(“이 화물은 대철레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되었으며 배꽃바구미·복숭아거위벌레·복숭아심식나방·복숭아명나방·배명나방·참거위벌레에 감염되지 아니하였음.)

#### 4

####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           |
|------------------------------------|-----------|
| 1. <i>Adoxophyes orana</i>         | 애모무늬잎말이나방 |
| 2. <i>Adris tyrannus amurensis</i> | 으름밤나방     |
| 3. <i>Amphipyra erebina</i>        | 지옥까마귀밤나방  |
| 4. <i>Amphipyra pyramidea</i>      | 줄먹밤나방     |
| 5. <i>Anthonomus pomorum</i>       | 배꽃바구미     |
| 6. <i>Archips asiaticus</i>        | 뽕날개잎말이나방  |
| 7. <i>Archips crataeganus</i>      | 뽕무늬잎말이나방  |
| 8. <i>Archips fuscocupreanus</i>   | 검모무늬잎말이나방 |
| 9. <i>Archips nigricaudanus</i>    | 흰꼬리잎말이나방  |
| 10. <i>Archips xylosteanus</i>     | 모무늬잎말이나방  |
| 11. <i>Axylia putris</i>           | 썩은밤나방     |
| 12. <i>Balsa malana</i>            | 잎말이밤나방    |
| 13. <i>Calyptra gruesa</i>         | 큰우묵밤나방    |
| 14. <i>Calyptra lata</i>           | 금빛우묵밤나방   |
| 15. <i>Calyptra thalictri</i>      | 갈고리밤나방    |
| 16. <i>Carposina sasakii</i>       | 복숭아심식나방   |
| 17. <i>Catocala agitatrix</i>      | 잿빛노랑뿔날개나방 |
| 18. <i>Catocala bella</i>          | 사과노랑뿔날개나방 |
| 19. <i>Catocala fulminea</i>       | 번개뿔노랑밤나방  |
| 20. <i>Choristoneura diversana</i> | 오리나무잎말이나방 |

|                                                  |            |
|--------------------------------------------------|------------|
| 21. <i>Clepsis pallidana</i>                     | 붉은무늬잎말이나방  |
| 22. <i>Cornicacoecia lafauryana</i>              | 소귀나무잎말이나방  |
| 23. <i>Cosmia exigua</i>                         | 주먹무늬밤나방    |
| 24. <i>Dichocrocis punctiferalis</i>             | 배명나방       |
| 25. <i>Ectomyelois pyrivorella</i>               | 복숭아명나방     |
| 26. <i>Eligma narcissus</i>                      | 가중나무껍질밤나방  |
| 27. <i>Endoclyta excrescens</i>                  | 박쥐나방       |
| 28. <i>Halymorpha halys</i> (= <i>H. mista</i> ) | 썩덩나무노린재    |
| 29. <i>Hoshinoa adumbratana</i>                  | 앞노랑사과잎말이나방 |
| 30. <i>Hoshinoa longicellana</i>                 | 사과잎말이나방    |
| 31. <i>Lagoptera juno</i>                        | 무궁화밤나방     |
| 32. <i>Nezara antennata</i>                      | 폴색노린재      |
| 33. <i>Ophiusa tirhaca</i>                       | 황색검은점피밤나방  |
| 34. <i>Oraesia emarginata</i>                    | 작은갈고리밤나방   |
| 35. <i>Oraesia excavata</i>                      | 갈고리밤나방     |
| 36. <i>Oraesia incerta</i>                       | 네점밤나방      |
| 37. <i>Orthosia munda</i>                        | 오얏나무밤나방    |
| 38. <i>Othreis fullonica</i>                     | 애으름밤나방     |
| 39. <i>Pandemis cinnamomeana</i>                 | 흰머리잎말이나방   |
| 40. <i>Pandemis dumetana</i>                     | 자두갈색잎말이나방  |
| 41. <i>Pandemis heparana</i>                     | 갈색잎말이나방    |
| 42. <i>Pandemis serasana</i>                     | 벚갈색잎말이나방   |
| 43. <i>Parallelia maturata</i>                   | 보라끝빠른밤나방   |
| 44. <i>Pseudaulacaspis pentagona</i>             | 뽕나무까지벌레    |
| 45. <i>Ptycholoma lecheana</i>                   | 감나무잎말이나방   |
| 46. <i>Rhynchites foreipennis</i>                | 참거위벌레      |
| 47. <i>Rhynchites heros</i>                      | 복숭아거위벌레    |
| 48. <i>Serrodus campana</i>                      | 왕잎밤나방      |
| 49. <i>Spilonota albicana</i>                    | 사과속애기잎말이나방 |
| 50. <i>Spilonota lechriaspis</i>                 | 사과순나방      |
| 51. <i>Spilonota ocellana</i>                    | 사과흰애기잎말이나방 |
| 52. <i>Tetranychus kanzawai</i>                  | 차응애        |
| 53. <i>Tetranychus viennensis</i>                | 벚나무응애      |
| 54. <i>Tortrix sinapina</i>                      | 그물노랑잎말이나방  |

## \* 대만[사과] 는 배 검역요건 참조

### Ⅲ. 「포도」 생과실 수출검역요건







# 미 국

## part 01



### 1 수출단지 요건

- 가. 수출 선과 시작 하기 30일 전까지 수출단지 등록해야함
- 나. 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4월 말까지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현지조사 요청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재배지검역 신청
  - 대미 수출용 포도 생산단지 대표자는 재배지 검역 신청서를 재배지 검역 희망일 20일전 까지 재배지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재배지검역 신청
- 나. 재배지 검역은 2회 실시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 가. 대미수출용 포도 생산단지 대표자는 과실 선과 1주일 전까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농가별 선과계획서를 제출
- 나. 포장 박스에는 해당 농가의 코드번호를 표시(코드번호는 스템프 잉크로 찍거나 농가 코드번호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
- 다. 선과된 또는 검역에 합격한 대미 수출용 포도를 보관하는 창고에는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포도, 또는 타 물품을 함께 보관 불가
- 라. 식물위생증명서 발급
  - 과실검역 결과, 미국 수출 포도 생과실 검역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선적분별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
  - 증명서 부기사항.  
 “The fruit in the shipment was found free from *C. puntiferalis*, *E. ambiguella*, *S. pilleriana*, *S. auriferella*, *M. fructigena*, and *Nippoptilia vitis*.”(이 화물에 있는 과실은 복숭아열매나방,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열매꼭지나방, 잿빛무늬병 및 포도애털날개나방에 감염되지 않았음.)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도해



〈복숭아명나방〉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열매꼭지나방〉



〈포도애털날개나방〉



〈잿빛무늬병〉

# 캐나다

## part 02



### Ⅰ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과수원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1 수출단지 요건

대 캐나다 포도는 수출검역단지 요령에 따라 등록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가. 캐나다 수출용 포도는 캐나다측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과실 착과기부터 수확할 때까지 봉지를 씌워 재배하여야 하며, 재배기간 중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수확 전 1회 재배지 검역실시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가. 생산단지 대표는 매년 수출 선과 개시 30일전까지 선과장 및 저장시설을 점검·보완한 후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동 확인결과 식물검역관이 지시하는 보완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는 수출 선과를 시작할 수 없다.

나. 생산단지 대표는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선과책임자 1명 이상을 선과과정에 배치하여 캐나다측 우려병해충 감염험의가 있는 과실을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다. 생산단지 대표는 과실 선과 1주일 전까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농가별 선과계획서를 제출한다.

라. 포장 상자에는 해당 농가의 코드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코드번호는 스탬프잉크로 찍거나 농가 코드번호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마. 선과된 포는 검역에 합격한 캐나다 수출용 포도를 보관하는 창고에는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포도, 또는 타 물품을 함께 보관할 수 없다.

## 4 기타

봉지를 씌워서 재배하지 않은 포도는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훈증소독처리

### Ⅰ 캐나다 수출 포도의 훈증소독 처리기준

가. 봉지를 씌워서 재배하지 않은 포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로 훈증소독 처리하여 수출할 수 있다.

| 온도    |       | MB 투입량 |            | 유효최소가스농도 |        |          |        |
|-------|-------|--------|------------|----------|--------|----------|--------|
|       |       |        |            | 투약후 30분후 |        | 투약후 2시간후 |        |
| ℃     | ℉     | g/m³   | oz/1000ft³ | g/m³     | oz/ft³ | g/m³     | oz/ft³ |
| 27 이상 | 80 이상 | 24     | 24         | 19       | 19     | 14       | 14     |
| 21-26 | 70-79 | 32     | 32         | 26       | 26     | 19       | 19     |
| 16-20 | 60-69 | 40     | 40         | 32       | 32     | 24       | 24     |
| 10-15 | 50-59 | 48     | 48         | 38       | 38     | 29       | 29     |
| 5-9   | 41-49 | 64     | 64         | 48       | 48     | 38       | 38     |

나. 훈증소독처리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을 준수하여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5 캐나다의 우려병해충

- 가. 가루이과(*Aleurolobus vitis*)
- 나.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
- 다. 공각지벌레(*Eulecanium kunoense*)
- 라. 버찌가는잎말이나방(*Eupoecilia ambiguella*)
- 마. 검은썩음병(*Guignardia baccae*)
- 바. 이세리아깍지벌레(*Icerya purchasi*)
- 사. 잣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 아. 포도애틸날개나방(*Nippoptilia vitis*)
- 자.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 중 국

### part 03



#### Ⅰ 최근 변경 사항

-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라 고시 개정

#### 1 수출단지 요건

-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 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출단지는 선과장 내부에 최소 2개의 끈끈이트랩을 설치하고 선과기간 중에는 매일 중국측 우려병해충 발생유무를 조사하여 중국 포도 수출 선과장 예찰기록대장 기록보관
  - 중국측 우려병해충 발견시 즉시 통보
- 나. 수출단지 대표는 수출하고자 하는 그 해의 3월말까지 수출단지를 지정 신청. 소속 농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출선과장 또는 생산자 조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다. 과거에 지정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다시 지정받을 필요가 없으나, 재배지나 선과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
- 라. 수출단지 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수출단지, 재배지 및 선과장에 대하여는 지정 단위별로 지정을 취소
- 마. 수출검역 또는 도착지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하는 등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지정을 취소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참여농가는 재배기간 중 중국측 우려 병해충의 발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트랩조사(끈끈이 트랩 등) 또는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약제 방제 또는 생물적 방제를 실시하고 모든 예찰 및 약제 살포상황을 중국의 요청이 있을 시 제공
- 나.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는 등록된 약제이어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등록된 약제 목록을 중국에 제공
- 다. 중국 수출용 포도는 봉지를 씌워 재배되어야 하며, 수확이 완료되어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파손되지 않아야 함



### 3 선과·포장 및 수출검역

#### 〈선과·포장〉

1.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직접 수확되고 봉지가 씌워진 채로 선과장으로 운반되어야 하며, 봉지는 선과 직전 선과장에서 제거
2. 중국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재배지에서 생산된 포도는 중국으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거나 적절한 소독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단, 해당 소독 조치는 GACC에 의해 승인
3. 만약 상자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충망이 씌워져야 함
4. 포도에 우려병해충이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상자에 유황패드를 넣어야 함
5. 각 포장상자에는 봉인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등록
  - 수출단지 대표자는 테이프, 스티커 등 원하는 형식의 봉인 라벨을 제작사용
  -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7월 말까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봉인 라벨의 샘플과 도안 또는 사진을 제공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단, 등록 후 라벨의 변경 사항이 없을 경우 최초 등록으로 같음
  -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봉인 라벨을 등록 관리, 중국의 요청시 제공
  - 각 포장 상자의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영어로 품명, 원산지(시 또는 군), 수출국, 참여농가명 또는 그 등록번호, 선과장명 또는 그 등록번호 및 기타 정보가 표시
  - 각 포장의 소포장용기(트레이)에는 “중국 수출용”이란 문구를 중국어로 기재하여야 하며, 소포장은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각 포장상자에 그 문구를 기재

#### 〈수출 검역〉

1. APQA 식물검역관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의 검사단위별로 표본을 채취하여 검역을 실시
  - 선박화물의 경우 각 화물별 2% 이상, 최소 600개 포도송이
  - 항공화물의 경우 각 화물별 10% 이상
2.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중국의 우려 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 해당 화물이 생산된 과수원, 선과장에서 생산된 포도는 APQA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때까지 중국으로의 수출을 중단
3. APQA 식물검역관은 병해충 발견 상황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은 병해충 발견 상황을 GACC 또는 중국의 도착지 검역국(CIQ)에 제공

## 4 기 타

### □ 중국의 수입검역

- 포도 화물이 중국의 수입항에 도착하면, 해당 항구의 검역국(CIQ)에 검역 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동식물 수입 면허(허가서), 기타 관련 서류 및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검역을 실시
- 포도 화물이 등록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화물은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 살아 있는 중국측 우려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소독 또는 반송, 재수출 또는 폐기
- GACC는 해당 내용을 APQA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 재배지산 포도의 대중국 수출을 중단하거나 실제 상황에 따라 모든 포도의 중국 수출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구

### □ 수출중단 및 재개

- APQA는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취해야 하며, GACC는 이러한 개선조치의 결과를 평가하여 수출중단 조치의 지속 여부를 결정

## 5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병 1종〉

1. 버티실리움시들음병(*Verticillium dahliae*)

### 〈해충 3종〉

1. 고사리그물충채벌레(*Hercinothrips femoralis*)
2. 온실가루깍지벌레(*Planococcus kraunhiae*)
3. 포도뿌리혹벌레(*Viteus vitifolii*)



## 호 주

### part 04

#### Ⅰ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참여농가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1 수출단지 요건

-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 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나. 생산자조직 대표는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 및 등록해야 함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참여농가는 포도 재배 기간 동안 호주의 우려병해충에 대하여 우수농산물(GAP) 또는 통합병해충방제(IPM) 적용 등 적절한 방제를 실시해야 하며, 방제프로그램은 병해충 방제와 포장위생이 통합된 것으로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함
- 나. 참여농가는 포도검은썩음병(*P. baccae*)과 포도잎녹병(*P. euvitis*)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함
- 다. 참여농가는 약제방제 상황을 기록·보존해야 함
- 라. 봉지를 씌워 재배해야함
  - 포도알의 지름이 대략 8~10mm 시기에 봉지를 씌워야 함
  - 어린포도가 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봉지 씌우기 전에 약제살포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봉지는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벗겨서는 안 되며, 병해충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파손되지 않아야 함
  - 봉지씌운 날짜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호주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어야 함
- 마.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재배지검역을 신청해야 함



### 3 선과 및 포장(보관)

- 가. 호주 선과가 진행 중일 때에는 참여농가에서 생산된 포도만 선과장으로 반입해야 함
- 나. 선과장으로 반입된 포도는 생산자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반입 및 보관해야 함
- 다. 봉지가 파손되지 않은 과실만 반입되어야 함
- 라. 호주 수출용 포도 선과 작업 이전에 선과 라인이 청소되어야 함
- 마. 포장상자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해야 함
  - 한국산, 수출자(또는 트레이드마크), 과실종류(식용 포도)
  - 참여농가 및 선과장 등록번호, 선과일자, 수입국(목적지)
- 바.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외부에 통기구가 있는 경우 직경 0.98mm 이하, 두께 0.16mm 이상의 망으로 씌워야 함
  -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를 봉인할 경우 각 포장이 봉인되지 않아도 됨
- 사. 모든 포장 상자에는 유황패드(가)가 삽입되어야 함
  - 유황패드는 유효성분(SO<sub>2</sub>)이 97%이상인 등록된 상품으로 비닐포장 내부에 포장되어야 함
- 아. 호주로 수출될 포도는 다른 국가 또는 내수용 화물과 섞이거나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격리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함
- 자. 포장이 완료된 포도는 저장 및 운송기간 동안 상태의 변동 없이 검역적 완결성이 유지되어야 함

### 4 수출검역

- 가. 각 화물에 대하여 600개(1,000개 이하는 450개) 포도송이를 대상으로 우려병해충 및 규제물질의 부착여부를 검역
- 나. 수출검역 결과 포도검은썩음병, 포도잎녹병 또는 벚초파리가 검출되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 포도가 생산된 참여농가는 나머지 수출시즌 동안 수출에서 제외됨
- 다.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및 열매꼭지나방이 검출되면 불합격
- 라. 호주의 우려병해충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됨
  - 다만, 메틸브로마이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처리된 후 재검역할 수 있음

마. 식물검역증명서 기재사항

- 참여농가 등록번호
- 선과장 등록번호(또는 선과장명)
-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
- 소독처리 세부사항(소독처리 한 경우에 한함)
- 다음의 부기사항

- ① “이 화물은 호주의 한국산 포도 수입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역결과 검역병해충 및 규제물질에 감염되지 않았음”
- ② 캠벨얼리 및 거봉 품종을 벚초파리 시스템즈 어프로치로 재배하였을 경우, “이 과일은 벚초파리 관리를 위한 시스템즈 어프로치 요건에 맞게 재배되었음”

## 5 기 타

가. 현지검역을 실시한 화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물리적인 확인만 실시함

- 일반적인 서류 확인을 실시함
-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되거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해명과 호주의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통관이 보류됨. 이 경우 화물은 재수출, 폐기 또는 소독처리 될 수 있음

나. 현지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입검역을 실시함

- 서류 확인 심사 및 생과실에 대한 검역을 실시함
- 수입검역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입자는 화물을 재수출, 폐기 또는 소독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할 수 있음
- 포도검은색응병, 포도잎녹병 및 벚초파리가 검출되면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해당 포도가 생산된 참여농가는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에서 제외됨
-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및 열매꼭지나방이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됨

## 6

##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무당벌레(Halequin ladybird, *Harmonia axyridis*)
- 콩풍뎅이(Scarab beetle, *Popillia mutans*)
- 녹색콩풍뎅이(Chinese rose beetle, *Popillia quadriguttata*)
- 뱃초파리(Spotted winged drosophila, *Drosophila suzukii*)
- 차응애(Kanzawa spider mite, *Tetranychus kanzawai*)
- 가루깍지벌레(Comstock mealybug, *Pseudococcus comstocki*)
- 온실가루깍지벌레(Japanese mealybug, *Planococcus kraunhiae*)
- 버찌가는잎말이나방(European grape berry moth, *Eupoecilia ambiguella*)
- 도깨비잎말이나방(Leaf rolling tortrix, *Sparganothis pilleriana*)
- 열매꼭지나방(Apple heliodinid, *Stathmopoda auriferella*)
- 꽃노랑총채벌레(Wester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occidentalis*)
- 포도뿌리혹벌레(Grape phylloxera, *Daktulosphaira vitifoliae*)
- 포도검은썩음병(Grape cluster black rot, *Physalospora baccae*)
- 포도잎녹병(Grapevine leaf rust, *Phakopsora euvitis*)

## 뉴질랜드

### part 05



#### Ⅰ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참여농가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1 수출단지 요건

-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 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나. 생산자조직 대표는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 및 등록해야 함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뉴질랜드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적절한 병해충 관리를 실시해야 함
  - 병해충 관리는 우려병해충에 대한 예찰, 화학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및 경종적 방제를 포함함
  - 병해충 방제기록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방제기록에는 재배기간 중 사용된 약제명, 처리자명, 적용날짜 및 적용 비율이 포함되어야 함
- 나. 잡초방제 및 전정작업을 실시해야하며, 병해충에 감염된 포도나무 및 식물체 잔재는 폐기해야 함
- 다. 봉지를 씌워 재배해야함
  - 포도알의 지름이 대략 8~10mm 시기에 봉지를 씌워야 함
  - 봉지는 방수 및 방광(rain and light proof) 재질이어야 함
  - 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봉지를 벗기지 않아야 함
  - 봉지씌운 날짜를 기록·보관해야 함
- 라.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마. 낙과된 과실, 봉지가 없거나 파손된 과실, 땅과 접촉된 과실은 과수원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함
- 바.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기간 중 재배지검역을 신청해야 함

### 3 선과 및 포장(보관)

- 가. 선과장내에서는 사과식초트랩 또는 사과식초와인트랩 등을 이용하여 벼초파리 예찰을 실시해야 함
- 나. 선과기간에는 뉴질랜드 수출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다른 국가 수출용 또는 내수용 포도의 선과 후에는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다. 선과장에는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포도 중 봉지가 파손되지 않은 과실만 반입해야 함
- 라. 선과검사 결과 차응애, 오이충채벌레, 복숭아명나방, 애모무늬잎말이나방, 열매 꼭지나방, 굴각지벌레가 검출되면 해당 화물은 뉴질랜드 수출에서 제외해야 함
- 마.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의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 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표기해야 함
- 선과장 등록번호
  - 참여농가 등록번호
  - 선과일자
- 바. 검역관의 감독하에 선적과 봉인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봉인번호(Seal No.)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해야 함

### 4 훈증 소독

- 가. 재배지검역에서 우려 해충(응애류, 총채벌레류, 나방류, 벼초파리)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포도는 아래 조건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MB) 훈증소독을 실시하여 수출할 수 있음(뉴질랜드 수출 참여농가에 한함)

| 약제농도               | 처리시간 | 처리온도       |
|--------------------|------|------------|
| 32g/m <sup>3</sup> | 2시간  | 22℃ 및 그 이상 |
| 40g/m <sup>3</sup> | 2시간  | 17-22℃     |
| 48g/m <sup>3</sup> | 2시간  | 12-17℃     |

- 나. 소독은 전체 공간(챔버 또는 천막)에 대하여 화물 용적이 50% 또는 그 이하에서 실시되어야 함

다. 소독처리시설은 다음의 기록을 유지해야 함

- 화물의 생산지(참여농가)
- “뉴질랜드” 표지 및 다른 화물과의 격리
- 처리절차, 처리화물에 대한 일련번호
- 소독처리 기록
- 소독장비에 대한 보정, 보정주기, 보정 처리자
- 소독 후 안전조치 사항
- 소독처리 화물과 미처리 화물의 분리보관 여부
- 장치>Loading) 및 관리감독 상황

라. 소독처리가 실패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화물은 재소독 처리하여야 함

## 5 수출검역

가. 수출검역시 아래에 따라 샘플을 수출하여 육안검사 실시

(단위: 송이)

| 검사단위의 규모      | 샘플 수량 |
|---------------|-------|
| 0 - 1,000     | 450   |
| 1,001 - 2,000 | 520   |
| 2,001 - 3,000 | 550   |
| 3,001 - 4,000 | 560   |
| 4,001 - 5,000 | 570   |
| 5,001 또는 그 이상 | 600   |

나. 수출검역 결과 뉴질랜드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소독처리하거나 수출에서 제외

다. 식물검역증명서 기재사항

- 참여농가 등록번호
- 선과장 등록번호
- 컨테이너 봉인번호
- 소독처리 세부사항(소독처리한 경우에 한함)
- 다음의 부기사항

- ① “본 포도 화물은 공식 확인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제활동을 수행하였음 (The table grapes in this consignment have undergone pest control activities that are effective against *Adoxophyes orana*, *Chrysomphalus dictyospermi*, *Conogethes punctiferalis*, *Drosophila suzukii*, *Monilinia fructigena*, *Stathmopoda auriferella*, *Tetranychus kanzawai* and *Thrips palmi* in accordance with the Official Assurance Programme.)”
- ② “대한민국은 공식 절차에 따라 포도와 관련된 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실파리가 없음이 증명되었음 (The Republic of Korea is free of fruit fly species of economic significance associated with fresh table grapes verified in accordance with the Official Assurance Programme.)”
- ③ “본 포도 화물은 공식 예찰조사에 의해 *Guinardia bidwellii* 무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것임 (The table grapes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sourced from an area free (verified by an official detection survey) from *Guinardia bidwellii*.)”

## 6 기 타

- 가. 뉴질랜드 도착항에서는 뉴질랜드 검역관만이 봉인을 개방할 수 있음
- 나. 봉인이 파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한국과 뉴질랜드의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됨
- 다. 화물이 도착하면 뉴질랜드 일차산업부는 “뉴질랜드의 생과실 및 채소류 수입검역 기준”에 따라 샘플 검역을 실시함
- 라. 검역병해충이나 식물체의 잔재물이 검출되거나 포장에 부착되었을 경우 또는 소독처리가 실패했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재선별
  - 소독처리(적절한 소독방법이 있는 경우)
  - 재수출(반송)
  - 폐기
  - 수출의 일시적 중단(수출 전 특별한 조치사항이 필요한 경우)

## 7 상대국 우려병해충 및 검역병해충 목록

| 구 분        | 학 명                               | 일 반 명      | 조치등급 |
|------------|-----------------------------------|------------|------|
| 우 려<br>병해충 | <i>Guignardia bidwellii</i>       | 검은썩음병      | 3    |
|            | <i>Monilinia fructigena</i>       | 잣빛무늬병      | 3    |
|            | <i>Adoxophyes orana</i>           | 애모무늬잎말이나방  | 2a   |
|            | <i>Chysomphalus dictyospermi</i>  | 굴각지벌레      | 2a   |
|            | <i>Conogethes punctiferalis</i>   | 복숭아명나방     | 2a   |
|            | <i>Drosophila suzukii</i>         | 벚초파리       | 2a   |
|            | <i>Stathmopoda auriferella</i>    | 열매꼭지나방     | 2a   |
|            | <i>Thrips palmi</i>               | 오이총채벌레     | 2a   |
|            | <i>Tetranychus kanzawai</i>       | 차응애        | 2a   |
| 검 역<br>병해충 | <i>Pestalotiopsis menezesiana</i> | 잎마름병       | 2    |
|            | <i>Pilidella diplodiella</i>      | 흰빛썩음병      | 2    |
|            | <i>Apolygus lucorum</i>           | 초록장님노린재    | 2    |
|            | <i>Apolygus spinolae</i>          |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 | 2    |
|            | <i>Aspidiotus destructor</i>      | 유리각지벌레     | 2    |
|            | <i>Diaphania indica</i>           | 목화바둑명나방    | 2    |
|            | <i>Eupoecilia ambiguella</i>      | 버찌가는잎말이나방  | 2    |
|            | <i>Harmonia axyridis</i>          | 무당벌레       | 2    |
|            | <i>Nippoptilia vitis</i>          | 포도애털날개나방   | 2    |
|            | <i>Orthotylus flavosparsus</i>    | 명아주장님노린재   | 2    |
|            | <i>Planococcus kraunhiae</i>      | 온실가루각지벌레   | 2    |
|            | <i>Pseudauleacaspis pentagona</i> | 뽕나무각지벌레    | 2    |
|            | <i>Pseudococcus comstocki</i>     | 가루각지벌레     | 2    |
|            | <i>Scitothrips dorsalis</i>       | 볼록총채벌레     | 2    |
|            | <i>Sparganothis pilleriana</i>    | 도깨비잎말이나방   | 2    |
|            | <i>Thrips hawaiiensis</i>         | 하와이총채벌레    | 2    |

※ 병해충 등급별 도착지 검출 시 조치사항

등급 1. : 혼입물 제거 - 흙 또는 식물의 일부분

등급 2. : 소독, 재선별, 재수출 또는 폐기

등급 2a. : 소독, 재수출 또는 폐기, 수출 잠정중단 조치

등급 3. : 재수출 또는 폐기, 수출 잠정중단 조치





■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과수원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참여농가는 GAP를 이행하여야 함

1 수출단지 요건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출선과장은 표준작업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 비치

나.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 선과 개시 30일 전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

2 재배지 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가. 참여농가 준수사항

- 병해충종합관리(IPM) 또는 태국측 우려병해충 관리를 위한 방제활동 실시
- 농산물우수관리(GAP) 이행
- 방제기록부 기록 및 보관

나.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선과20일전까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승인서 사본과 함께 참여농가 목록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가. 각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1. Product or produce of Korea
2. Name of exporting company
3. Name of fruit
4. Packinghouse code (PHC)
5. Production unit code (PUC)

〈 영문 표기 사항 〉

1. 한국산 상품 또는 농산물
2. 수출 업체명
3. 과실 명
4. 선과장 등록 번호
5. 참여농가 등록 번호

〈 국문 번역 〉

나. 생과실이 개별 상자에 포장되어 수출되는 경우, 각 포장상자 마다 “EXPORT TO THAILAND”(태국 수출용)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 부착

- 포장상자가 화물용 컨테이너에 팰릿(pallet)으로 적재되어 수출되는 경우, 팰릿(pallet)의 4면에 동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다. 수출검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 각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 샘플을 채취하여 실시
- 수출검역 결과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 하여야함 (단, 소독 방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 검역될 수 있음)

라. 수출검역증명서 부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The consignment of (품목명) frui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import of (품목명) from Korea to Thailand.”(“동 (품목명) 생과실 화물은 한국산 (품목명) 생과실의 태국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준비되었음.”)
-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 화물만 해당)

## 4 기 타

가. 해당 화물이 태국 수입지에 도착하면 DO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수입 검역 실시

나. 화물에 대한 샘플은 DOA 식물검역관 재량에 따라 임의로 채취되며, 살아있는 병해충 검출시 분류동정 실시 (해당 화물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 보류)

다. 1,000개 미만의 과실 화물의 경우 450개 또는 화물의 100%를 검사(1,000개 이상의 과실 화물의 경우 600개에 대하여 샘플 검사 실시)

## 5

##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병(중)**

## ✓ 진균(8)

- Coniella diplodiella* (흰빛썩음병)  
*Erysiphe necator* (흰가루병)  
*Monilinia fructigena* (잿빛무늬병)  
*Monilinia fructicola* (잿빛무늬병)  
*Pestalotiopsis menezesiana* (잎마름병)  
*Pestalotiopsis uvicola* (큰송이썩음병)  
*Phomopsis viticola* (덩굴썩음병)  
*Physalospora baccae* (포도검은썩음병)
- ✓ 세균(1)
- Pseudomonas viridiflava* (세균성잎마름병)

**해충(중)**

## ✓ 응애(1)

*Brevipalpus lewisi* (포도애응애)

## ✓ 딱정벌레목(3)

- Harmonia axyridis* (무당벌레)  
*Popillia mutans* (콩풍뎡이)  
*Popillia quadriguttata* (녹색콩풍뎡이)

## ✓ 노린재목(13)

- Macrosiphum euphorbiae* (감자수염진딧물)  
*Parthenolecanium corni* (말채나무공작지벌레)  
*Lopholeucaspis japonica* (배나무흰각지벌레)  
*Parlatoria camelliae* (동백점각지벌레)  
*Pinnaspis strachani* (고사리핀각지벌레)  
*Pseudaulacaspis pentagona* (뽕나무각지벌레)  
*Apolygus lucorum* (초록장님노린재)  
*Apolygus spinolae*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  
*Orthotylus flavosparsus* (명아주장님노린재)  
*Daktulosphaira vitifoliae* (= *Viteus vitifoliae*)  
 (포도뿌리혹벌레)  
*Crisicoccus matsumotoi* (버들가루각지벌레)  
*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각지벌레)  
*Pseudococcus viburni*
- ✓ 나비목(3)
-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Eupoecilia ambiguella* (버찌가는잎말이나방)  
*Sparganothis pilleriana* (도깨비잎말이나방)



#### IV. 「감」 생과실 수출검역요건





# 미 국

## part 01



### 1 수출단지 요건

- 가. 수출 선과 시작 하기 30일 전까지 수출단지 등록해야 함
- 나. 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는 4월 말까지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현지조사 요청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대미 수출용 감 생산단지 대표자는 지배지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첨부하여 매년 4월말까지 그 지역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에 재배지 검역 신청
- 나. 복숭아명나방, 감꼭지나방, 온실가루াক지벌레, 감나무응애 : 해당 과수원은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
  - 수출에서 제외된 과수원이 이듬해에 다시 수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견된 해충에 대해 방제를 실시하여 박멸시켜야 함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 가. 검역에 합격한 감은 대미 수출용 박스에 포장
  - 포장 박스에는 해당 농가의 코드번호 표시

### 4 미국의 우려병해충

- 가.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
- 나. 감꼭지나방(*Stathmopoda masinissa*)
- 다. 온실가루াক지벌레(*Planococcus kraunhiae*)
- 라. 감나무애응애(*Tenuipalpus zhizhilashviliae*)

# 베트남

## part 02



### ■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과수원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1 수출단지 요건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출선과장은 각지벌레 등 병해충 제거를 위한 에어컴프레서 및 선과 후 베트남 수출용 감 전용 저온저장시설을 구비하여야 함

나.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4월 말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

### 2 재배지 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가. 참여농가 준수사항

- 베트남측 우려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감 생과실 재배력에 따라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적·화학적·생물적 방제 등을 실시
- 적절한 주기에 따라 나방류의 월동기에 나무줄기의 거친 껍질을 벗겨 소각하거나, 적절한 약제를 살포하여 겨울을 보낸 유충 제거
- 나방류 방제적기(6월 및 8월)에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화학적 방제 실시
- 세균 및 진균병 발병 예방을 위해 나무의 세력이 약화되어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식밀도, 수형 유지 및 비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 병해충의 이병물을 제거하고, 재배포장의 위생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함
- 벚초파리 발생 예방을 위해 수확 2달 전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낙과를 주 1회 제거하여야 함
- 방제기록부 기록 및 보관

나.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4월말까지 재배지검역 신청

- 재배지검역은 3회(5월중, 8월중 및 수확전) 이루어짐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 가. 베트남 수출용 감은 APQA 검역관 감독하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 포장 전 2회 이상(1차: 선과장 입고 전, 2차: 선별라인) 선별되어야 함
- 나. 포장상자 외부에는 ‘베트남수출용(For Vietnam)’이라는 표시와 참여농가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표시
- 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감 생과실 수출화물에 대해 2%의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The consignment of fresh persimmon/sweet persimmon fruits has been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fresh persimmon (*Diospyros kaki* Thunb.)/sweet persimmon fruits (*Diospyros kakivar. domestica* Mak.) from Korea into Vietnam”
- 라. 베트남측 우려병해충 무발생 재배지에서 생산된 화물 인 경우, 참여농가명 또는 참여농가 등록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함

### 4 기타

- 가. 아래의 해충이 검출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감은 다음과 같이 소독처리 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할 수 있음(소독처리결과는 식물검역증 소독처리란에 기입)
- *Drosophila suzukii* : 저온처리(0℃이하, 10일 이상) 또는 MB 훈증처리
  - *Grapholita molesta* : 저온처리(0℃이하, 40일 이상) 또는 MB 훈증처리
  - *Stathmopoda masinissa* : MB 훈증처리
- ※ MB 훈증처리는 과육 온도 15℃의 대기압 상태에서 48g/㎡으로 2시간동안 실시되어야 하며, 용적률은 훈증상 용적의 50%를 넘지 않아야 함

### 5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                                            |
|---------------------------------------------------------------|--------------------------------------------|
| 세균점무늬병<br>( <i>Pseudomonas syringae</i> pv. <i>syringae</i> ) | 복숭아순나방( <i>Grapholita molesta</i> )        |
| 검은별무늬병( <i>Fusicladium levieri</i> )                          | 산호세깍지벌레( <i>Diaspidiotus perniciosus</i> ) |
| 과일부패병( <i>Pestalotia diospyri</i> )                           | 굴깍지벌레( <i>Lepidosaphes conchiformis</i> )  |
| 벚초파리( <i>Drosophila suzukii</i> )                             | 긴숨깍지벌레붙이( <i>Phenacoccus aceris</i> )      |
|                                                               | 감꼭지나방( <i>Stathmopoda masinissa</i> )      |



Ⅰ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과수원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참여농가는 GAP를 이행하여야 함

1 수출단지 요건

-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출선과장은 표준작업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 비치
- 나.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 선과 개시 30일 전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

2 재배지 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참여농가 준수사항
- 병해충종합관리(IPM) 또는 태국측 우려병해충 관리를 위한 방제활동 실시
  - 농산물우수관리(GAP) 이행
  - 방제기록부 기록 및 보관
- 나.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선과20일전까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승인서 사본과 함께 참여농가 목록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가. 각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1. Product or produce of Korea
2. Name of exporting company
3. Name of fruit
4. Packinghouse code (PHC)
5. Production unit code (PUC)

〈 영문 표기 사항 〉

1. 한국산 상품 또는 농산물
2. 수출 업체명
3. 과실 명
4. 선과장 등록 번호
5. 참여농가 등록 번호

〈 국문 번역 〉

나. 생과실이 개별 상자에 포장되어 수출되는 경우, 각 포장상자 마다 “EXPORT TO THAILAND”(태국 수출용)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 부착

- 포장상자가 화물용 컨테이너에 팰릿(pallet)으로 적재되어 수출되는 경우, 팰릿(pallet)의 4면에 동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다. 수출검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 각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 샘플을 채취하여 실시
- 수출검역 결과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단, 소독 방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 검역될 수 있다.

라. 수출검역증명서 부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The consignment of (품목명) frui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import of (품목명) from Korea to Thailand.” (“동 (품목명) 생과실 화물은 한국산 (품목명) 생과실의 태국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준비되었음.”)
-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 화물만 해당)

### 4 기 타

가. 해당 화물이 태국 수입지에 도착하면 DO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수입 검역 실시

나. 화물에 대한 샘플은 DOA 식물검역관 재량에 따라 임의로 채취되며, 살아있는 병해충 검출시 분류동정 실시 (해당 화물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 보류)

다. 1,000개 미만의 과실 화물의 경우 450개 또는 화물의 100%를 검사(1,000개 이상의 과실 화물의 경우 600개에 대하여 샘플 검사 실시)

## 5

##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병(종)

## ✓ 진균(9)

*Aureobasidium pullulans**Cercospora kaki* (모무늬낙엽병)*Colletotrichum horii* (탄저병)*Diaporthe eres* (줄기마름병)*Monilinia fructigena* (잣빛무늬병)*Monilinia laxa* (잣빛무늬병)*Mycosphaerella nawae* (둥근무늬낙엽병)*Pestalotiopsis longiseta* (겹둥근무늬병)*Zygophiala wisconsinensis* (과피얼룩병)

## 해충(종)

## ✓ 응애(2)

*Tenuipalpus zhizhilashviliae* (감나무응애)*Panonychus ulmi* (사과응애)

## ✓ 노린재목(13)

*Parthenolecanium corni* (말채나무공작지벌레)*Lepidosaphes conchiformioides* (배나무굴작지벌레)*Lepidosaphes ulmi* (사과굴작지벌레)*Lopholeucaspis japonica* (배나무흰작지벌레)*Pinnaspis strachani* (고사리핀작지벌레)*Pseudaonidia duplex* (조개작지벌레)*Pseudaulacaspis pentagona* (뽕나무작지벌레)*Asiacornococcus kaki* (감나무주머니작지벌레)*Eriococcus lagerstroemiae* (주머니작지벌레)*Dysmicoccus wistariae* (등나무가루작지벌레)*Phenacoccus aceris* (긴숨작지벌레붙이)*Phenacoccus pergandei* (큰숨작지벌레붙이)*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작지벌레)

## ✓ 나비목(4)

*Ostrinia scapulalis* (콩줄기명나방)*Thyas juno* (= *Lagoptera juno*) (무궁화밤나방)*Stathmopoda masinissa* (감꼭지나방)*Grapholita molesta* (복숭아순나방)

## ✓ 총채벌레목(1)

*Ponticulothrips diospyrosi* (감관총채벌레)

# 칠레

## part 04



### ■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과수원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1 수출단지 요건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출선과장에 선과 감독 기록부 비치

나. 생산자조직 대표는 매년 4월 30일 까지 수출단지를 지정 신청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가. 참여농가는 칠레 우려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및 관리

나. *Monilinia fructigena*의 방제를 위해, 수확 전 최소 1회 적용약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다. 단지 대표자는 재배기간 중 재배지 검역을 신청하여야 함

- 재배지 검역은 매년 2회 이상 실시
- *Monilinia fructigena*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과수원은 당해 연도 수출 제외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가. 선과장의 관리자는 감 생과실의 포장일자, 수출검역희망일자, 컨테이너 선적 또는 반출일자 등에 대해 수출검역 전 관할 지역 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

나. 포장상자에는 과일의 일반명 또는 학명, 수출국(Republic of Korea), 참여농가명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등록번호)와 “Export to the Republic of Chile”가 표시되어야 함

다. 항공화물인 경우 통기구멍에 망(1.6mm×1.6mm 이하)을 부착하거나 팔레트 전체를 망이나 비닐로 포장하여야 함

라. 수출검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 수출화물의 로트별로 최소 2%에 해당하는 샘플을 채취하여 실시

마. 수출검역증명서 부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① 컨테이너번호와 Container seal number(컨테이너 봉인번호)
- ② 이 화물은 한국산 감 생과실의 칠레 수출을 위한 요건에 부합하며, *Adoxophyes orana*, *Planococcus kraunhiae*, *Pseudococcus comstocki*, *Pseudococcus cryptus*, *Conogethes punctiferalis*, *Stathmopoda masinissa* and *Monilinia fructigena*가 없음.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Phytosanitary Requirements for the Export of fresh persimmon from South Korea to Chile and is free from *Adoxophyes orana*, *Planococcus kraunhiae*, *Pseudococcus comstocki*, *Pseudococcus cryptus*, *Conogethes punctiferalis*, *Stathmopoda masinissa* and *Monilinia fructigena*.")

#### 4 기 타

- 가. 감 생과실을 칠레로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는 등록을 신청하기 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 프로그램(GAP) 인증을 받아야 함
- 나. 칠레에서 수입 검역 중 *Adoxophyes orana*, *Planococcus kraunhiae*, *Pseudococcus comstocki*, *Pseudococcus cryptus*, *Conogethes punctiferalis*, *Stathmopoda masinissa*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은 남은 시즌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
- 다. 칠레에서 수입검역 중 *Monilinia fructigena*가 검출될 경우, 검출 원인과 개선 조치가 양국 검역 당국 간 합의될 때까지 모든 한국산 감 생과실의 수출이 중단

#### 5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해충 (6종)〉

1.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2. *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깍지벌레)
3. *Pseudococcus comstocki* (가루깍지벌레)
4. *Pseudococcus cryptus* (굴애가루깍지벌레)
5. *Conogethes punctiferalis* (복숭아명나방)
6. *Stathmopoda masinissa* (감꼭지나방)

##### 〈병 (1종)〉

1. *Monilinia Fructigena* (잿빛무늬병)

## 페 루

### part 05



#### Ⅰ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과수원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1 수출단지 요건

-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출선과장에 선과 감독 기록부 비치
- 나. 생산자조직 대표는 매년 4월30일까지 수출단지를 지정 신청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참여농가는 페루 우려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및 관리
- 나. 병해충 관리상황 기록 보관
- 다. 수확 3달 전부터 주 1회 낙과 제거
- 라. 선과장으로 운송일지 기록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 가. 참여농가 등록번호,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Export to Peru”가 표시되어야 함
- 나. 항공화물인 경우 통기구멍에 망(1.6mm×1.6mm 이하)을 부착하거나 팔레트 전체를 망이나 비닐로 포장하여야 함
- 다. 수출검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 수출화물의 로트별로 최소 2%에 해당하는 샘플을 채취하여 실시
- 라. 수출검역증명서 부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① 컨테이너번호와 Container seal number(컨테이너 봉인번호)

- ② 감 생과실은 APQA가 검역한 재배지에서 생산되었으며 한국에서 페루로 생과일을 수출하는 프로토콜에 부합하며, *Panonychus ulmi*, *Drosophila suzukii*, *Adoxiphyes orana*, *Grapholita molesta*, *Stathmopoda masinissa* 그리고 *Conogethes punctiferalis*가 없음을 확인함. (“The persimmon fresh fruit comes from production places inspected by APQA and complies with the Protocol for the export of fresh fruit from Korea to Peru, and it has been verified that is free of *Panonychus ulmi*, *Drosophila suzukii*, *Adoxiphyes orana*, *Grapholita molesta*, *Stathmopoda masinissa* and *Conogethes punctiferalis*”).
- ③ “벚초파리 사멸을 위하여 감 생과실에 효율적인 처리가 적용되었음” (“The application of an effective quarantine treatment to the persimmon fruit to kill *Drosophila susukii*”).
- ④ (육상저온처리의 경우) “저온처리 종료일: 00년 00월 00일” (The date of completion of treatment: dd. mm. yy)
- ⑤ (수송중 저온처리의 경우) “저온처리 시작일: 00년 00월 00일”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reatment: dd. mm. yy)

#### 4 기타(단지 참여농가 제외, 소독처리, 도착지검역, 현지검역, 상대국통보. 등)

가. 페루 수출 감 생과실은  $0.9^{\circ}\text{C} \pm 0.7^{\circ}\text{C}$  또는 그 이하에서 12일 이상 육상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 되어야 함

나. 페루 수입 검역 중 벚초파리가 검출될 경우 해당 수출단지는 수출에서 제외됨

#### 5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해충 (6종)〉

1. *Drosophila suzukii* (벚초파리)
2. *Panonychus ulmi* (사과응애)
3.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4. *Grapholita molesta* (복숭아순나방)
5. *Stathmopoda masinissa* (감꼭지나방)
6. *Conogethes punctiferalis* (복숭아명나방)



## V. 「감귤」 생과실 수출검역요건





# 미 국

## part 01



### 1 수출단지 요건

수출 선과 시작 하기 30일 전까지 수출단지 등록해야함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대미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은 과실을 **표면살균**하기 위한 **침지소독설비** 보유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가. 감귤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 신청

나. 선과 및 과실표면살균

- (1) 검역 신청된 대미 수출용 감귤류는 **등록된 선과장으로 출하하여 선과 실시**
- (2) 선과 및 검역기간 중 **내수용이나 타국 수출용 과실의 선과장내 반입 불허**
- (3) 선과장에서는 병해충 감염과, 손상과 및 이물질 등을 철저히 선별하고 즉시 선과장 밖으로 반출
- (4) 선과장에서는 과실의 표면살균 이전에 세척 및 솔질을 실시하고, 표면살균 이후에는 왁스코팅 처리 실시
- (5) 감귤궂양병이 전파 방지를 위해 다음의 한가지의 방법으로 과실 표면살균 실시
  - **200ppm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용액 (pH 6.0 ~ 7.5)에서 최소 2분간 완전 침지
  - **1.86%~2.0% 농도의 SOPP(sodium o-phenyl phenate)** 용액에서 최소 1분간 완전 침지
  - **85ppm 농도의 과산화초산(peroxyacetic acid)** 용액에서 최소 1분간 완전 침지
- (6) 선과장에서는 과실을 통하여 오렌지더렁이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다음의 과실 표면 살균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이마자릴(Imazalil)** 또는 **티아벤타졸(Thiabendazole)**의 사용방법에 따른 표면살균

다. 포장 후 곧바로 선적 컨테이너에 선적되지 않는 물량은 지정된 저장고에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과 구분하여 보관

#### 4 미국의 우려병해충

##### 〈해충〉

*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  
*Anacanthocoris stricornis* 자귀나무허리노린재  
*Archips breviplicanus* 사과무늬잎말이나방  
*Arcte coerulea* 암청색줄무늬밤나방  
*Bastilla maturata* 보라끝수증다리밤나방  
*Calyptra lata* 금빛갈고리밤나방  
*Calyptra thalictri* 갈고리밤나방  
*Carbula humerigera* 참가시노린재  
*Ceroplastes japonicus* 거북밀까지벌레  
*Ceroplastes pseudoceriferus* 뿔밀까지벌레  
*Ceroplastes rubens* 루비까지벌레  
*Chrysodeixis eriosoma* 붉은금무늬밤나방  
*Conogethes punctiferalis* 복숭아명나방  
*Dolycoris baccarum* 알락수염노린재  
*Drosicha corpulenta* 짙신까지벌레  
*Epuraea domina* 애넓적밀빠진벌레  
*Epuraea fallax* 밀빠진벌레아과 일종  
*Eucorysses grandis* 긴광대노린재  
*Eudocima fullonia* 애으름밤나방  
*Formica japonica* 곰개미  
*Glaucias subpunctatus* 기름빛풀색노린재  
*Helicoverpa armigera* 왕담배나방  
*Homalogonia obtusa* 네점박이노린재  
*Megymenum gracilicorne* 톱날노린재  
*Mimela flavilabris* 애삼나무풍뎅이  
*Mimela splendens* 풍뎅이  
*Mimela testaceipes* 별줄풍뎅이  
*Miridiba coreana* 검정풍뎅이아과 일종  
*Mocis undata* 큰구름무늬밤나방  
*Nezara antennata* 풀노린재  
*Ophiusa tirhaca* 황색검은점띠밤나방

*Oraesia emarginata* 작은갈고리밤나방  
*Oraesia excavata* 갈고리밤나방  
*Palomensa angulosa* 북방폴노린재  
*Panonychus elongatus* 잎응애과 일종  
*Parlatoria ziziphi* 깍지벌레아과 일종<sup>1)</sup>  
*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깍지벌레  
*Plautia stali* 갈색날개노린재  
*Protaetia brevitarsis* 흰점박이꽃무지  
*Protaetia orientalis* 점박이꽃무지  
*Pseudococcus cryptus* 굴애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sp. 가루깍지벌레과 일종  
*Scirtothrips dorsalis* 볼록충채벌레  
*Tarsonemus* sp. 먼지응애과 일종  
*Thrips palmi* 오이충채벌레  
*Toxoptera odinae* 붉나무소리진딧물  
*Unapsis yanonensis* 화살깍지벌레<sup>1)</sup>  
*Vespa mandarina* 장수말벌

#### 〈병〉

*Alternaria* sp. (*A. alternata* 및 *A. citri* 제외)  
*Capnodium tanakae* 굴나무그을음병  
*Capnophaeum fuliginodes*  
*Cladosporium* sp. (*C. herbarum* 제외)  
*Colletotrichum* sp. (*C. acutatum*, *C. coccodes* 및 *C. gloeosporiodes* 제외)  
*Elsinoe australis* 오렌지더렁이병  
*Elsinoe* sp. (*E. fawcetti* 제외)  
*Guinardia* sp. (*G. bidwellii* 및 *G. mangiferae* 제외)  
*Limacinia japonica*  
*Microsphaeopsis* sp.  
*Phaeopeltis japonica*  
*Xanthomonas citri* subsp. *citri* 감귤궤양병<sup>2)</sup>

1) 고착성 깍지벌레로 식용 과실에서 발견 시에는 검역처분 대상이 아님

2) 침지소독 한 경우 식용 과실에서는 검역처분 대상이 아님

# 태 국

## part 02



### Ⅰ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과수원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참여농가는 GAP를 이행하여야 함

### 1 수출단지 요건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출선과장은 표준작업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 비치

나.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감귤 수출 선과 개시 30일전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

### 2 재배지 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가. 참여농가 준수사항

- 병해충종합관리(IPM) 또는 태국측 우려병해충 관리를 위한 방제활동 실시
- 농산물우수관리(GAP) 이행
- 오렌지더렁이병 감염 방제 조치
- 방제기록부 기록 및 보관

나.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참여농가를 등록하고, 수확 한달 전까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배지검역을 신청해야 함

- 제주도산 감귤(*Citrus reticulata* I.e. unshu variety)만 수출가능

다. 재배지검역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을 1회 실시하고, 태국측 우려병해충 감염여부 확인
- 재배지검역 결과 오렌지더렁이병이 검출된 농가는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가. 선과장 내 오렌지더렁이병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음

- 선과장 관리책임자는 과실이 선과장에 도착하면 오렌지더렁이병 감염 여부 확인
- 감염이 의심되는 과실은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통보
-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오렌지더렁이병 검출 농가를 당해시즌 수출 농가 목록에서 제외

나. 감귤 생과실 소독 방법(아래의 3가지 방법 중 1가지 선택)

- 200ppm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용액으로 2분 이상 과실을 완전히 침지(용액은 pH6.0-7.5 유지)
- 전체 용액의 1.86~2.0% 농도의 SOPP(sodium o-phenyl phenate) 용액으로 과실을 완전히 침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거품을 낼 수 있는 양의 비누 또는 세척제가 용액에 첨가되어 있는 경우 45초동안 침지. 충분한 양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경우 1분 동안 침지
- 85ppm 농도의 과산화초산(peroxyacetic acid) 용액에서 1분 동안 과실을 완전히 침지

다. 감귤 생과실은 포장할 때 각 소독제 라벨에 정해진 지침에 따라 Imazalil 또는 Thiabendazole 처리해야 함

라. 감귤 생과실은 왁스 처리되어야 함

마. 각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함

1. Product or produce of Korea
2. Name of exporting company
3. Name of fruit
4. Packinghouse code (PHC)
5. Production unit code (PUC)

〈영문 표기 사항〉

1. 한국산 상품 또는 농산물
2. 수출 업체명
3. 과실 명
4. 선과장 등록 번호
5. 참여농가 등록 번호

〈국문 번역〉

바. 생과실이 개별 상자에 포장되어 수출되는 경우, 각 포장상자 마다 “EXPORT TO THAILAND” (태국 수출용)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 부착

- 포장상자가 화물용 컨테이너에 팰릿(pallet)으로 적재되어 수출되는 경우, 팰릿(pallet)의 4면에 동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사. 수출검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 각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 샘플을 채취하여 실시
- 수출검역 결과 오렌지더탱이병 검출시 해당 농가는 당해연도 태국 수출에서 제외

아. 수출검역증명서 부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The consignment of citrus fruit was produced in Jeju Islan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import of citrus fruit from Korea to Thailand.”(“감귤 생과실 화물은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용으로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준비된 화물임”)
-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undergone surface sterilization and fungicide treatment (Imazalil / Thiabendazole).”(“화물 내 과실은 표면 소독 및 살균 처리됨 (Imazalil 또는 Thiabendazole 중 한 가지 기재).”)
-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 화물에만 해당)
- 감귤 생과실 품종(cultivar of citrus) 기재

## 4 기 타

가. 해당 화물이 태국 수입지에 도착하면 DO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수입허가서 (Import permit)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수입 검역 실시

나. 수입검역 중 오렌지더탱이병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재수출하거나 폐기

- 검역본부는 남은 수출시즌 동안 해당 과수원 수출 중단

다. 수출 첫 해부터 3년동안 DO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가 실시되어야 함



## 5

##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병(중)**

## ✓ 진균(3)

*Elsinoe australis* (오렌지더텅이병)*Geotrichum citri-aurantii* (흰곰팡이병)*Phytophthora cactorum* (역병)**해충(중)**

## ✓ 응애(1)

*Aculops pelekassi* (귤녹응애)

## ✓ 노린재목(13)

*Ceroplastes japonicus* (거북밀까지벌레)*Ceroplastes pseudoceriferus*(=*Ceroplastes ceriferus*) (뽕밀까지벌레)*Coccus pseudomagnoliarum* (어리목련까지벌레)*Parthenolecanium corni* (말채나무공까지벌레)*Parthenolecanium persicae* (복숭아공까지벌레)*Lepidosaphes ulmi* (사과굴까지벌레)*Lopholeucaspis japonica* (배나무흰까지벌레)*Pseudaonidia duplex* (조개까지벌레)*Unaspis euonymi* (사철까지벌레)*Unaspis yanonensis* (화살까지벌레)*Drosicha corpulenta* (짚신까지벌레)*Nipaecoccus nipae* (종려가루까지벌레)

## ✓ 나비목(5)

*Peridroma saucia* (뒷흰날개밤나방)*Eumeta minuscula* (차주머니나방)*Adoxophyes orana* (애모무늬잎말이나방)*Archips breviplicanus* (사과무늬잎말이나방)*Archips xylosteanus*(=*Archips xylosteana*) (모무늬잎말이나방)*Homona magnanima* (차잎말이나방)

## ✓ 총채벌레목(1)

*Mycterothrips glycines* (콩어리총채벌레)



## 1 수출단지 요건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과실표면을 살균할 수 있는 소독 설비
- 선과 전·후 수출용 농산물을 구분·격리하여 보관할 저장시설
- 농산물의 선별을 위한 선과시설 및 조명시설
- 외부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출입구 및 창문 방충시설
- 선과장(보관장소 포함) 내·외부 청결 상태 유지
- 수출검역에 필요한 검역대 및 조명시설

나. EU로 감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라 지정 신청하여야 함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가.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선과개시 30일 전까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별지 제7호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제출

나. 검역관은 재배지 검사신청서 접수 후, 수출과수원 및 주변에 대하여, EU측 우려 병해충 발생여부 확인을 위한 재배지검역 실시

다. 재배지검역 결과 우려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을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

라.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장은 EU 국가로 5년간 수출 실적이 없거나, 등록된 수출단지의 부적합 사항에 대해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출단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 가. 감귤류 생과실은 처음 사용하는 깨끗한 상태의 상자에 포장되어야 하며, 동 포장상자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함
- 나. 감귤류 생과실은 Sodium orthophenylphenate(SOPP)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약제로 소독처리 하여야함
- 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 과정에서 과경(꽃자루)과 잎이 부착된 감귤류 생과실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라. 수출검역

등록된 수출단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EU 측 우려병해충 감염 여부 및 과경과 잎의 혼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역단위를 구성하여 포장된 과실 중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검역 실시.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및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음

#### 라. 증명서 발급

- (1)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이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식물검역 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Annex VII. points 57, 58. option(d), 59. option(a), 60. option(d) and 61. option(a) of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2072” (동 과실은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9/2072 ANNEX VII, 57, 58(d), 59(a), 60(d) 및 61(a)에 부합함)

- (2)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는 선과장 등록번호와 같은 역추적이 가능한 화물 정보가 기재되어야 함

### 4 EU측 우려병해충 목록

가. *Xanthomonas citri* pv. *citri*

나. *Xanthomonas citri* pv. *aurantifolii*

다. *Pseudocercospora angolensis* (T. Carvalho & O. Mendes) Crous & U. Braun

라. *Phyllosticta citricarpa* (McAlpine) Van der Aa

※ 상기 목록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분류동정 및 검토 결과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음



## VI. 「딸기」 생과실 수출검역요건





# 캐나다

## part 01



### 1 수출단지 요건

- 가. 수출 단지를 4.30까지 등록
- 나. 재배시설 출입구에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한 방충시설 구비
- 다. 내수용 딸기와 구분 보관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재배지에 끈끈이 트랩 설치되어야 함 - 캐나다 병해충 발견 시 방제 조치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 가. 선과책임자는 수출단지에 등록된 농가인지 확인
- 나. 포장시 농가등록번호(코드번호), 선과장등록번호(코드번호) 표기
- 다.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1. 농가 등록번호 및 선과장 등록번호
  - 2. 부기사항 : “이 화물은 캐나다의 검역병해충 5종에 대해 캐나다식품검사청(CFIA)이 수용한 위험관리방안을 준수하여 생산되고 준비되었음

### 4 캐나다 측 우려병해충

- 1. 딸기꽃바구미(*Anthonomus bisignifer*)
- 2. 사과무늬잎말이나방(*Archips breviplicatus*)
- 3. 딸기잎말이나방(*Archips semistructa*)
- 4. 도둑나방(*Manestra brassicae*)
- 5. 볼록충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 1 수출단지 요건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선과장은 선별이 완료된 딸기를 내수용 또는 다른 국가 수출용 딸기와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저온창고 등의 보관시설을 구비하여야 함
- 선과장은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되어야 함

나.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딸기 정식전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

## 2 재배지 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가.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다음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수출용 딸기 재배시설은 비닐 또는 유리 온실이어야 함
- 재배시설 주변은 잡초제거 등 청결을 유지하고 병해충 오염원이 없어야 함
- 재배시설에서는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여야 함
- 재배시설에서는 흙이 혼합되지 않은 재배매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배매체는 사용 전 선충 방제를 위한 소독처리를 실시하여야 함
- 재배매체의 소독처리 및 재배기간 중 약제방제 실시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 참여농가는 재배기간 중 제4조의 검역해충 및 기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약제방제를 실시하여야 함

나.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9월말까지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함

- 재배지검역 결과 베트남측 우려병해충 검출시 해당 농가에서 생산된 딸기는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됨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 가. 선과장에서는 부패과 등을 제거하고 흙, 잎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철저히 선별
- 나. 포장상자 외부에는 ‘베트남수출용(For Vietnam)’이라는 표시와 참여농가(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표시
- 다.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딸기 생과실 수출화물에 대해 2%의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The consignment was inspe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found free from quarantine pests specified at Annex 1 of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for the importation of fresh strawberry fruits(*Fragaria ananassa* Duchense)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Vietnam”. (“이 화물은 한국에서 검역을 받았으며, 한국산 딸기의 베트남 수입을 위한 식물위생요건 부속서 1에 명시된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확인함.”)

### 4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가. 국화잎선충(*Aphelenchoides ritzemabosi*)
- 나. 딸기눈선충(*Ditylenchus acris*)
- 다. 마늘줄기선충(*Ditylenchus dipsaci*)



# 태 국

## part 03

### Ⅰ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과수원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참여농가는 GAP를 이행하여야 함

### 1 수출단지 요건

-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출선과장은 표준작업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 비치
- 나.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 선과 개시 30일 전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

### 2 재배지 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참여농가 준수사항
- 병해충종합관리(IPM) 또는 태국측 우려병해충 관리를 위한 방제활동 실시
  - 농산물우수관리(GAP) 이행
  - 방제기록부 기록 및 보관
- 나.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선과20일전까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승인서 사본과 함께 참여농가 목록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가. 각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

1. Product or produce of Korea
2. Name of exporting company
3. Name of fruit
4. Packinghouse code (PHC)
5. Production unit code (PUC)

1. 한국산 상품 또는 농산물
2. 수출 업체명
3. 과실 명
4. 선과장 등록 번호
5. 참여농가 등록 번호

〈 영문 표기 사항 〉

〈 국문 번역 〉

- 나. 생과실이 개별 상자에 포장되어 수출되는 경우, 각 포장상자 마다 “EXPORT TO THAILAND”(태국 수출용)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 부착
- 포장상자가 화물용 컨테이너에 팰릿(pallet)으로 적재되어 수출되는 경우, 팰릿(pallet)의 4면에 동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다. 수출검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 각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 샘플을 채취하여 실시
  - 수출검역 결과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 하여야함 (단, 소독 방법이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 처리된 후 재 검역될 수 있음)
- 라. 수출검역증명서 부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The consignment of (품목명) frui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import of (품목명) from Korea to Thailand.” (“동 (품목명) 생과실 화물은 한국산 (품목명) 생과실의 태국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준비되었음.”)
  -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 화물만 해당)

## 4 기 타

- 가. 해당 화물이 태국 수입지에 도착하면 DO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수입허가서 (Import permit)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수입 검역 실시
- 나. 화물에 대한 샘플은 DOA 식물검역관 재량에 따라 임의로 채취되며, 살아있는 병해충 검출시 분류동정 실시 (해당 화물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 보류)
- 다. 1,000개 미만의 과실 화물의 경우 450개 또는 화물의 100%를 검사(1,000개 이상의 과실 화물의 경우 600개에 대하여 샘플 검사 실시)

## 5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병(종)                                                                                                                                                    | 해충(종)                                               |
|---------------------------------------------------------------------------------------------------------------------------------------------------------|-----------------------------------------------------|
| ✓ 진균(3)<br><i>Monilinia fructigena</i> (잿빛무늬병)<br><i>Sphaerotheca aphana</i> (= <i>Podosphaera aphanis</i> ) (흰가루병)<br><i>Septoria fragariae</i> (흰무늬병) | ✓ 딱정벌레목(1)<br><i>Anthonomus bisignifer</i> (딸기꽃바구미) |

## 호 주

### part 04



#### Ⅰ 최근 변경 사항

- 기존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각각 등록을 수출단지등록으로 일원화
- 선과장과 참여농가의 기본적인 요건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름
- 벚초파리 트랩조사를 실시한 생산포장(온실)에서 생산된 딸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수출 가능
- 딸기모무늬병 재배지검역은 육안검사 2회로 완화됨

#### 1 수출단지 요건

-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 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나. 생산자조직 대표는 정식 전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해야 함
- 다. 선과장 및 보관창고의 창문에는 초파리속(*Drosophila* spp.)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0.98mm 이하의 방충망이 설치되어야 함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호주의 우려병해충 중 벚초파리와 딸기모무늬병은 재배지검역을 실시해야 함
  - 벚초파리 관리를 위한 트랩조사는 수확 4주전부터 수확시까지 연속으로 실시
  - 딸기모무늬병 재배지검역은 유묘(재식 후 30일 경과 시점)를 대상으로 1회, 수확 4~6주전 온실 내 모든 식물을 대상으로 1회, 총 2회 육안검사 실시해야 함

#### 3 선과 및 포장(보관)

- 가. 선과 과정에서 호주의 우려병해충 뿐만 아니라 잎, 줄기, 흙, 잡초종자, 식물체 잔재물, 잔가지 등과 같은 규제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나. 선과 과정 중, 선과 이후의 보관 또는 이동 중에 병해충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다. 선과 라인은 선과 작업 이전에 청소되어야 함
- 라.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은 포장재로 포장상자 외부에 통기구가 없을 것
- 마. 포장상자 외부에 통기구가 있거나, 통기구가 있는 포장상자를 파렛트 단위로 포장하는 경우 직경 0.98mm 이하의 망으로 씌워야 함
- 바. 포장상자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함
- 호주 수출용 한국산 과실
  - 과실종류(이 경우, 신선 딸기)
  - 선과장 등록번호
  - 생산장소 또는 참여농가(온실) 등록번호
  - 훈증 소독한 경우, 소독처리 시설명 또는 등록번호 (천막인 경우, 훈증소독처리 업체명 또는 등록번호)

- Product of Korea for Australia
- Fruit type (that is fresh strawberries)
- Packing house registration number
- Place of production or greenhouse number
- Treatment facility name and/or code (if a treatment is used as risk management measure)

- 사. 딸기를 포장한 직후 컨테이너에 넣어 운송하는 경우, 선과장에서 호주 수입검역 시까지 컨테이너 봉인이 유지되어야 함
- 아. 내수용 화물 또는 호주 이외의 타국가 수출용 화물과 섞이거나 교차 감염되지 않도록 격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

## 4

## 수출검역

- 가. 각 화물별로 600개(1,000개 이하는 450개) 딸기에 대하여 검역
- 나. 식물검역증명서 기재사항
- 참여농가(온실) 및 선과장 번호 또는 이름
  - 화물당 상자 수
  - 컨테이너번호와 봉인번호(선박화물의 경우)
  - 병해충 관리방안에 따른 부기사항

## 5 기 타

- 가. 호주 검역당국이 발행한 수입허가증명서(import permit)가 있어야 함
- 나. 해당 화물은 호주의 최초 도착지에서 호주 검역당국의 검역을 받아야 함
- 호주 검역당국은 우려병해충 또는 규제물질의 여부를 검역함
  - 화물이 불합격된 경우, 소독(적용 가능한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할 수 있음
- 다. 화물이 지속적으로 불합격될 경우, 호주 검역당국은 원인 규명과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한국산 딸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음
- 라. 호주 검역당국은 한국산 딸기 수입요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명 또는 현지 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 6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대만총채벌레(Europea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intonsa*)
- 꽃노랑총채벌레(Wester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occidentalis*)
- 차응애(Kanzawa spider mite, *Tetranychus kanzawai*)
- 범초파리(Spotted winged drosophila, *Drosophila suzukii*)
- 딸기모무늬병(Angular leaf spot, *Xanthomonas fragariae*)

## Ⅶ. 「파프리카」 생과실 수출검역요건







# 미 국

## part 01



### 1 수출단지 요건

- 가. 수출 단지를 4.30까지 등록
- 나. 온실 요건 : 출입구 이중 자동 폐쇄문, 개구부 직경 0.6mm 이하의 망 또는 개구부 직경 1.6mm 이하 망 및 끈끈이 설치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수출단지대표자는 매년 파프리카 정식후 10일 이내에 재배지 검역신청
- 나. 착과기에서 수확시 가지 월 1회 재배지검역 실시
- 다. 미국의 우려병발생시 적절한 방제조치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 가. 생산단지 대표자는 선과 전일 까지 선과계획서를 제출
- 나. 수확된 파프리카를 선과장으로 이송 시 망 또는 비닐로 덮어야 함
- 다. 수확된 파프리카는 선과장에서 24시간 이내 포장
- 라.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상자에 포장
- 마. 상자에는 해당 단지 또는 농가의 코드번호 입력

### 4 미국측 우려병해충

- 가. 거세미나방(*Agrotis segetum*)
- 나. 왕담배나방(*Helicoverpa armigera*)
- 다. 담배나방(*Helicoverpa assulta*)
- 라. 도둑나방(*Mamestra brassicae*)
- 마. 조명나방(*Ostrinia furnacalis*)
- 바.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 사. 오이충채벌레(*Thrips palmi*)
- 아. 볼록충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 자. 잣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 중 국

### part 02



#### Ⅰ 최근 변경 사항

-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라 고시 개정

#### 1 수출단지 요건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 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출단지 대표자는 관리책임자(GAP관리자 등)를 배치하여 선과, 포장, 저장, 수송과정에서 검역적 안전관리업무를 수행
- 관리책임자는 APQA 또는 GAP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검역 및 안전관리업무 등에 대한 교육 이수

나.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7월말까지 수출단지를 지정 신청

다. 다만, 소속 농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출선과장 또는 생산자 조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가.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의 중국 수출용 파프리카 선과장 저온창고 온실 등록대장을 매년 9월 15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

나. 참여농가는 관리책임자의 지도하에 재배온실에서 본 위생요건을 포함한 농산물 우수관리(GAP)를 이행

다. 참여농가는 관리책임자의 지도하에 제2조의 검역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경종작·화학적·생물적 방제를 포함한 병해충종합관리(IPM)를 이행, 예찰 및 방제기록(약제명, 유효성분, 사용일자, 사용농도 등 포함)을 영농일지 등으로 기록보관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 〈선과·포장〉

1. 포장상자에는 파프리카 형태(Type of Sweet Pepper), 생산지역[(도(道), 시(市) 군(郡)], 생산국가, 재배온실 명칭과 등록번호, 수출단지 명칭과 등록번호가 영문으로 표기
2. 각 포장상자 외부에는 ‘중국 수출용(輸往中华人民共和国)’ 문구가 중국어로 표기

#### 〈수출 검역〉

1. 해당 수출단지에서 최소 2년 동안 검역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샘플수량을 1%로 감소하여 검역할 수 있음
2. 중국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원인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APQA 식물검역관은 합격한 화물에 대해 컨테이너번호와 다음 사항을 부기한 증명서 발급
  - The consignment meet the Inspection and Quarantine Requirements for the Export of Sweet Peppers from Korea to China” (“이 화물은 한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부합함”)

### 4 기 타

#### □ 수출업체 등록

- 수출업체의 대표자는 매년 9월 15일까지 수출업체 등록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미 등록이 완료된 수출업체의 경우는 신청 생략 가능
- 검역본부장은 적합할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수출업체에게 회신하고, 파프리카 중국 수출업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 □ 해관총서 통보사항

- APQA는 매년 수출 개시 전까지 등록된 수출단지, 재배온실, 저온창고 및 수출업체의 역추적 정보(이름, 주소, 등록번호)를 중국의 해관총서(GACC)에 등록하기 위해 제공
- 수출 개시 전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 샘플 제공
- APQA는 병해충종합관리(IPM) 프로그램 및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록을 제공
-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APQA는 즉시 GACC에 통보하고, 화학적 또는 생물적 방제를 포함한 종합 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
- APQA는 수출검역의 병해충 검출사항을 기록보관하고, GACC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

## □ 중국의 수입검역

- 화물이 중국에 도착하면, 반입항의 세관 사무소에 신고. 중국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동식물수입허가서, 기타 관련서류 및 화물 표기사항을 확인하는 등 식물검역을 실시
- 승인받지 않은 재배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 화물은 중국으로의 반입 금지
- 중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 또는 한국에 보고되지 않은 중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GACC는 해당 화물을 폐기, 반송 또는 소독 등의 조치, 해당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의 수입중단을 APQA에 즉시 통보
- APQA는 수입중지 통보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함. 해관 총서는 시정조치를 평가하여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

## □ 국외생산지검역

- GACC는 수출 첫해에 식물검역관(2명)을 2주간 파견하여 재배온실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포장, 저온저장 관리를 확인, 파프리카 화물에 대하여 합동검역을 실시. 국외생산지검역의 시기는 GACC와 APQA가 협의하여 결정
- 국외생산지검역에서 살아있는 중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을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거나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국외생산지검역 결과를 바탕으로, GACC는 다음 수출시즌의 국외생산지검역 실시여부를 결정
-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이 부담

## □ 수출프로그램 재검토

- 매 한국 파프리카의 병해충 발생 및 검출상황에 따라서 GACC는 위험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우려병해충 목록 및 관련된 검역요건을 수정하기 위해 APQA와 협의
- 위험관리방안 및 검역요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GACC는 5년마다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고 이행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 국외생산지조사 결과 및 양국의 동의에 따라서 국외생산지조사 및 국외생산지검역 요건을 개정

## 5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                                                    |
|--------------------------------------------|----------------------------------------------------|
| ■ 시들음병( <i>Verticillium dahliae</i> )      | ■ 토마토반점위조병<br>( <i>Tomato spotted wilt virus</i> ) |
| ■ 딱충나무진딧물( <i>Aphis sambuci</i> )          | ■ 씨크라멘먼지응애<br>( <i>Phytonemus pallidus</i> )       |
| ■ 채소바구미( <i>Listroderes costirostris</i> ) | ■ 명주달팽이( <i>Acusta despecta</i> )                  |
| ■ 아메리카잎굴파리( <i>Liriomyza trifolii</i> )    |                                                    |

중국의 우려 검역병해충 도해



딱총나무진딧물1



딱총나무진딧물2



채소바구미 성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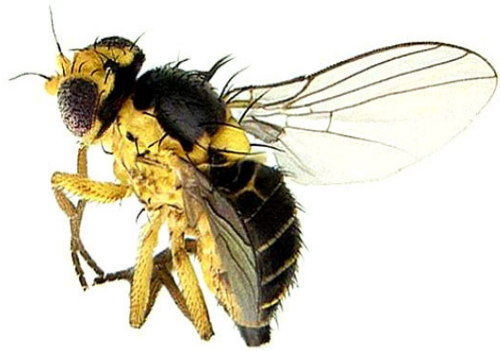


씨크라멘먼지응애





아메리카잎굴파리 피해



아메리카잎굴파리 성충



시들음병 감염된 줄기



건강한 줄기



토마토반점위조병(TSWV) 감염과실  
원형반점 및 황화증상



명주달팽이

# 베트남

## part 03



### 1 수출단지 요건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출을 희망하는 재배온실은 유리 또는 비닐 온실이어야 하며, 온실 출입구에는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이중문 등 적절한 방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나. 생산자조직 대표는 파프리카 생과실 정식 전에 수출단지 지정 신청

### 2 재배지 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가. 참여농가 준수사항

- 파프리카 재배기간 중 온실 내 베트남측 검역병해충 무발생 상태 유지
-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경종적·화학적·생물적 방제를 포함한 병해충종합관리(IPM) 이행
- 온실 내 병해충의 이병물을 제거하고, 재배포장의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 방제기록부에 방제사항 기록보관

나.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착과전에 재배지검역 신청

- 재배지검역은 2회(착과기 및 수확전) 이루어짐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가. 해충, 응애, 부패과 등은 선별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함

나. 포장상자 외부에는 ‘베트남수출용(For Vietnam)’이라는 표시와 재배 농가명 (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표시

다. 포장이 완료된 파프리카 생과실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내수용 및 타 국가 수출용 파프리카 생과실과 구분하여 저온창고에 보관

라.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감 생과실 수출화물에 대해 2%의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The consignment of fresh paprika fruits has been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fresh paprika fruits (*Capsicum annum* L.) from the Republic of Korea into Vietnam”

#### 4 기타

가. 수입검역 중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베트남 식물위생규정에 따라 처리

#### 5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가. 세균점무늬병(*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나. 세균무름병(*Pseudomonas marginalis* pv. *marginalis*)

다. 세균성잎마름병(*Pseudomonas viridiflava*)

라. 검은점열매썩음병(*Diaporthe phaseolorum*)

마. 알팔파모자이크바이러스(*Alfalfa mosaic virus*)

바. 참두위조바이러스(*Broad bean wilt virus*)

사. 고추마일드반점바이러스(*Pepper mild mottle virus*)



## 필리핀

### part 04



#### 1 수출단지 요건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출선과장은 선과기가 구비되어야 하고, 선과라인에는 솔질 또는 압축공기를 분사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수출선과장은 선과 전 또는 선과 후에 파프리카를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 재배지는 유리 또는 비닐 온실로써 온습도 조절이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주변에 병해충 오염원이 없어야 함

나. 생산자조직 대표는 참여농가 목록을 포함하여 수출 개시 1개월 전까지 수출단지 지정신청

#### 2 재배지 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가. 참여농가는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따라 재배지 관리 실시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가. APQA 식물검역관 감독하에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세척되어야 함

나. 파프리카 포장상자 2면에는 재배지 등록번호 및 “FOR THE PHILIPPINES” 표지

다. 포장이 완료된 파프리카는 수출 전까지 저온저장시설에 보관되어야 하며, 해당 저온저장시설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함

라. 검사가 완료된 파프리카는 냉장 컨테이너에 즉시 선적되어야 하며, 선적 후 가능한 빨리 운송되어야 함(냉장컨테이너의 수송 중 온도는 10℃ 이하로 유지)

마.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파프리카 생과실 수출 화물 당 600개의 파프리카를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1. “This shipment is covered by 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SPS IC) No.\_\_and container van seal No.\_.”(이 화물의 수입허가서번호는 00이고, 컨테이너 봉인번호는 00임)
2. “The paprika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produced in greenhouse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governing the entry of fresh paprika fruit to the Philippines and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quarantine pest.”(이 화물에 있는 파프리카는 필리핀의 수입요건에 의거 대한민국 온실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사결과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

#### 4 기타

가. 수입검역 중 필리핀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필리핀 식물위생규정에 따라 처리

#### 5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가. 해충

*Mamestra brassica*, *Trichoplusia ni*, *Phytonemus pallidus*

나. 진균

*Alternaria tenuissima*, *Colletotrichum coccoides* (*Gloeosporium piperatum*)  
*Colletotrichum acutatum*

다. 세균

*Pseudomonas viridiflava*

라. 바이러스

*Alfalfa Mosaic Virus*, *Pepper mild mottle virus(PMMV)*, *Pepper Mottle Virus*  
(*PepMoV*)

## VIII. 「참다래」 생과실 수출검역요건





# 대 만

## part 01



### ■ 최근 변경 사항

-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라 고시 개정

### 1 수출단지 요건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 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병해충 피해에 대한 그림설명 자료를 갖추어야 함

나. 수출단지 대표는 수출하고자 하는 그 해의 2월말까지 수출단지를 지정 신청.

다.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참여농가 등록대장을 매년 6월말까지 APQA에 보고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4월말 이전에 재배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6월 말까지 APQA에게 보고

### 3 선과·포장 및 수출검역

#### 〈선과·포장〉

1. 수출단지는 포괄적인 관리작업 매뉴얼과 포장기록을 구비, 대만 수출용이 아닌 참다래가 선과장에 보관되거나 또는 선과장 내에서 처리될 경우, 반드시 대만 수출용 참다래와 적절히 구역을 분리, 해당 참다래와 대만 수출용 참다래 포장은 동시에 선과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음
2. 다만, 아래의 안전조치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참다래와 동시 선과 수행 가능. 포장 기록은 현지 조사를 위해 1년간 보관
  - 적용범위 : 대만 수출용으로 재배기간중 요건을 이행한 제배지산 생과실.
  - 포장박스 : 내수 및 타국 수출용은 대만 수출용과 구분.

- 작업공간 : 포장완료 상자의 파레트 적재 작업공간은 대만 수출용과 공간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작업내용을 구분 표시
- 구분보관 : 대만 수출용 배는 파레트 적재 작업 및 수출검역 후 대만 전용 저온창고에 보관하도록 조치
- 관리·감독 : 동시 선과 시 모든 검역적 안전조치는 선과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실시
- 대만 검역요건을 충족하여 재배된 참다래라 하더라도 내수 및 타국 수출용으로 포장된 이후에는 대만으로 수출 불가

### 〈수출검역〉

1. 수출검역에 합격한 참다래 화물에 대해 선과장 이름 또는 등록번호와 다음 사항을 부기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
  - *"The consignment have been inspected in compliance with Quarantine Requirements for the Importation of Fresh Kiwifruits from Korea to Taiwan"*  
(“이 화물은 한국산 참다래의 대만 수출을 위한 검역 요건에 따라 검역이 실시되었음”)

## 4 기 타

### □ 대만식물검역당국에 통보할 사항

- 요청이 있는 경우 역추적 정보 제공
- 검역본부는 매년 8월 말 전, BAPHIQ에 선과장 등록번호, 이름 및 주소 목록을 제공

### □ 기타요건

- 대만의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병해충이 한국에서 발생할 경우, 한국산 참다래의 대만 수출은 언제라도 중단
- 한국의 병해충 상황 변화와 한국산 참다래의 병해충 발견에 따라, BAPHIQ는 추가적 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검역 병해충 목록과 관련 검역 조치의 변경을 위해 검역본부와 협의

## 5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가. 꽃썩음병(*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 나. 궂양병(*Pseudomonas syringae* pv. *morsprunorum*)
- 다. 궂양병(*Pseudomonas syringae* pv. *actinidiae*)
- 라. 꼭지썩음병(*Diaporthe actinidi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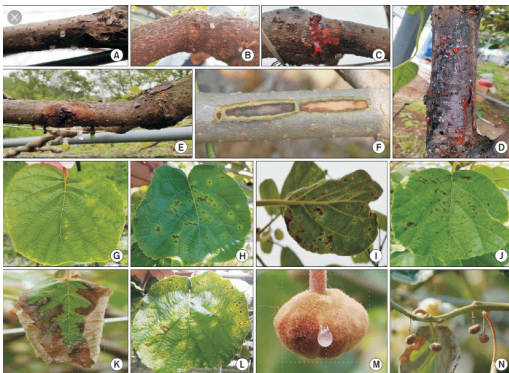
## 대만의 우려 검역병해충 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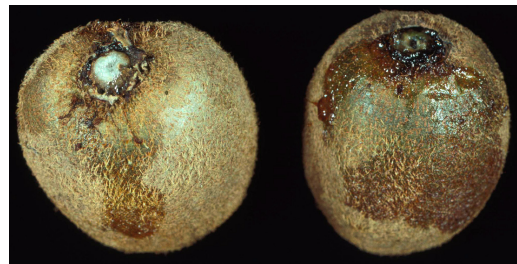
꽃썩음병(*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신중섭 등, 2004, RPD)



궤양병(*Pseudomonas syringae* pv. *morsprunorum*,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궤양병(*Pseudomonas syringae* pv. *actinidiae*; 손경인 등, 2016, RPD)      꼭지썩음병(*Diaporthe actinidiae*; Crisosto et al., 1996, UCDAVIS)



- 가. 꽃썩음병(*Pseudomonas syringae* pv. *syringae*)
- 나. 궤양병(*Pseudomonas syringae* pv. *morsprunorum*)
- 다. 궤양병(*Pseudomonas syringae* pv. *actinidiae*)
- 라. 꼭지썩음병(*Diaporthe actinidia*)





## IX. 「기타」 생과실 수출검역요건





## 미국 [토마토]

### part 01



#### 1 수출단지 요건

- 가. 수출 단지를 4.30까지 등록
- 나. 온실요건 : 출입구 이중자동폐쇄문, 개구부 직경1.6mm 이하 망 및 끈끈이 설치
- 다. 신규단지는 미국 검역관의 현지확인 및 승인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토마토 정식 후 10일 이내 재배지 검역 신청
- 나. 호박과실파리 트랩설치 및 트랩조사 (생산시설 내·외부)
  - 수출단지 대표는 각 생산지의 트랩조사 결과를 매월 검역본부에 보고
  - 트랩조사 결과 기록 및 호박과실파리 발견시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 가. 수확된 토마토를 선과장으로 이송 시 망 또는 비닐로 덮어야 함
- 나. 수확된 토마토는 선과장에서 24시간 이내 포장
- 다. 상자에는 해당 단지 코드번호 입력
- 라. 2%샘플 검사 및 내부가해 해충검사를 위해 1kg 절개 검사

#### 4 미국측 우려병해충

- 가. 호박과실파리(*Bactrocera depressa*)
- 나. 왕담배나방(*Helicoverpa armigera*)
- 다. 담배나방(*Helicoverpa assulta*)
- 라. 도둑나방(*Mamestra brassicae*)
- 마. 조명나방(*Ostrinia furnacalis*)
- 바. 볼록충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 사. 오이충채벌레(*Thrips palmi*)



## 캐나다 [토마토]

### part 02

#### 1 수출단지 요건

- 가. 수출 단지를 토마토 묘 정식 전 까지 신청
- 나. 온실요건 : 2mm×2mm의 망이 설치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수출단지 대표자는 주기적으로 병해충 모니터링 및 방제실시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 가. 포장상자에 선과장과 온실의 코드 또는 명칭 표기
- 나. 포장이 완료된 토마토에 대해 2% 수출 검역필요

#### 4 캐나다측 우려병해충

- 가. *Dickeya zeae*
- 나. *Helicoverpa armigera*
- 다. *Helicoverpa assulta*
- 라. *Monilinia fructigena*
- 마. *Pantoea ananatis*
- 바. *Ralstonia solanacearu Race 3 Biovar 2*
- 사. *Scirothrips dorsalis*
- 아. *Thrips palmi*
- 자. *Mamesta brassicae*

## 베트남 [토마토]

### part 03



#### 1

#### 베트남 수출 토마토 수출검역요건

가. 국산 토마토 관련 베트남 측의 우려병해충

- 감자뿔나방, 시들음병, 세균성잎마름병, 궤양병, 세균성잎반점병 외 9종

나. 주요 수출검역요건

- 온실 및 선과장 등록(동 목록은 수출 개시 전 베트남측에 제공)
  - 온실 출입구 이중문 등 적절한 방충조치
  - 선과장에는 선과시설 및 조명시설
- 생산시설 내부에 대한 검역병해충 14종 무발생포장증명
  - 예찰조사(재배지검역 및 생과실절개검사) : 재배기간 및 수확전 각각 1회 실시
- 수출 검역
  - 2% 표본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1kg의 과실을 절단하여 검역
  - 수출검역 시 감자뿔나방이 발견된 화물은 불합격 단, 소독처리 후 수출검역 가능
- 포장 및 보관
  - 선과가 완료된 토마토 생과실을 포장하는 모든 포장재는 흙, 잎, 식물성 잔재물에 오염되지 않아야 함
  - 모든 포장상자에는 “베트남 수출용”, 온실 및 선과장 등록번호 표시
  - 수출검역을 완료한 파레트는 안전하게 비닐로 씌워야함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의 발급
  - “이 토마토는 베트남의 토마토 수입요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었으며 검사결과 베트남의 검역병해충, 흙, 식물성 잔재물 및 잎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부기

## 미국 [당근]

### part 04



#### 1 수출단지 요건

수출 단지를 당근 파종 전 까지 신청

#### 2 재배지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수출단지 대표자는 주기적으로 병해충 모니터링 및 방제 실시
  - 농가별 방제기록부 작성
- 나. 당근재배기간 중 미국의 우려병원체에 대한 살균제 살포
- 다. 수확 전 미국의 우려병해충이 없음을 확인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 가. 당근의 세척시 소독처리 실시(Naocl 100~200 ppm, pH 6.0~7.0)
- 나. 당근의 녹색 지상부 제거 필요
- 다. 박스 표시사항

선과장명 (또는 코드번호) Packing house No.  
농가명 (또는 코드번호) Grower No.  
포장일자 Code or Date of Packing

#### 4 기타

수출 첫해시즌에 수출 중미국 검역관 현지조사 실시

#### 5 미국측 우려병해충

- 가. *Helicobasidium mompa*
- 나. *Sclerotinia nivalis*



## 태국 [참외·멜론]

### part 05

#### 1 수출단지 요건

- 가. 수출검역단지(선과장포함)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수출선과장은 표준작업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 비치
- 나.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참외(멜론) 정식 전까지 수출단지 지정 신청
-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 개시 한달 전까지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

#### 2 재배지 관리 및 참여농가 준수사항

- 가. 참외(멜론) 생과실은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온실에서 재배되어야 함
- 나. 참여농가 준수사항
- 병해충종합관리(IPM) 이행 및 병해충 예찰
  - 방제기록부 기록 및 보관
- 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참여농가를 등록하고, 과실 착과기 전까지 재배지검역을 신청해야 함
- 라. 재배지검역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호박과실파리 트랩 조사 포함)을 착과기부터 수확이 완료될때까지 매 2주간격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 정밀검역 의뢰
  - 호박과실파리 트랩종류, 설치 밀도 및 유인제 교체주기는 다음과 같음
    - 트랩 종류 : 또한 McPhail 트랩 또는 우려병해충에 사용 허가된 단백질 미끼가 있는 유사 유형의 트랩
    - 설치밀도
      - 0.2ha 미만 수출농가(온실) : 2개

- 0.2ha 이상 ~ 0.5ha 미만 수출농가(온실) : 3개
  - 0.5ha 이상 1.0ha 이하 수출농가(온실) : 4개
  - 1ha 이상 수출농가(온실) : 1ha 당 4개 설치
  - 유인제 교체주기 : 1회/30일
- 호박과실파리 검출 온실은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다른 태국측 우려병해충 검출시 방제조치(방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농가 수출 제외)

### 3 선과 포장 및 수출검역

가. 수확된 참외(멜론)은 선과장으로 운송되는 동안 또는 포장을 기다리는 동안 방충망 또는 플라스틱 방수포로 덮여있어야 함

나. 참외(멜론) 포장 요건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구멍이 없는 상자에 포장되어야 함
- 상자에 담긴 참외(멜론)은 망태(망자루)에 넣어 봉하거나, 그물망으로 완전히 감싸야 함. 그물망의 구멍 지름은 1.6mm를 넘지 않아야 함
- 상자 포장 시 모든 환기구멍은 그물망으로 밀봉해야 함. 그물망의 구멍 지름은 1.6mm를 넘지 않아야 함
- 포장된 상자를 팰릿(pallet)에 적재하거나 묶음으로 포장하는 경우, 상자 묶음은 그물망으로 완전히 감싸거나 플라스틱으로 밀봉해야 함. 그물망을 사용할 경우 구멍 지름은 1.6mm를 넘지 않아야 함

다. 각 포장상자의 외부에는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정보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함

|                                |                  |
|--------------------------------|------------------|
| 1. Product or produce of Korea | 1. 한국산 상품 또는 농산물 |
| 2. Name of exporting company   | 2. 수출 업체명        |
| 3. Name of fruit               | 3. 과실 명          |
| 4. Packinghouse code (PHC)     | 4. 선과장 등록 번호     |
| 5. Production unit code (PUC)  | 5. 참여농가 등록 번호    |

〈 영문 표기 사항 〉

〈 국문 번역 〉

라. 생과실이 개별 상자에 포장되어 수출되는 경우, 각 포장상자 마다 “EXPORT TO THAILAND” (태국 수출용)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 부착

- 포장상자가 화물용 컨테이너에 팰릿(pallet)으로 적재되어 수출되는 경우, 팰릿(pallet)의 4면에 동 표기가 보이도록 스탬프 날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마. 수출검역은 다음과 같이 실시함

- 각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 샘플을 채취하여 DOA 검역관과 실시
- 1,000개 미만의 과실 화물의 경우 450개 또는 화물의 100%를 샘플 조사
- 1,000개 이상의 과실 화물의 경우 600개에 대하여 샘플 조사
- 호박과실파리 검출시 해당 화물은 불합격, 해당 온실은 당해 시즌 등록 농가 목록에서 제외

아. 수출검역증명서 부기사항은 아래와 같음

- “The consignment of melon fruit was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import of melon fruit from Korea to Thailand.”(동 참외(멜론) 생과실 화물은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태국 수입 요건에 따라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준비된 화물임)
-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 화물에만 해당)
- DOA 검역관은 해당 식물 검역증의 빈 공간에 서명해야 함

#### 4 기 타

가. 해당 화물이 태국 수입지에 도착하면 DO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수입 검역 실시

나. 수입검역 중 호박과실파리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재수출하거나 폐기

- 검역본부는 남은 수출시즌 동안 해당 과수원 수출 중단

다. 매년 DO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이 실시되어야 함

#### 5 상대국 우려병해충 목록

##### 병(종)

✓ 진균(1)

*Trichothecium roseum* (붉은썩음병)

##### 해충(종)

✓ 응애(1)

*Bryobia praetiosa* (클로버응애)

✓ 파리목(1)

*Bactrocera depressa* (호박과실파리)

✓ 노린재목(1)

*Trialeurodes vaporariorum* (온실가루이)



X. 「**화훼류**」  
수출검역요건







## 중국 [심비디움묘]

### part 01

가. 중국 수출 국산 심비디움묘에서 중국측의 우려 병해충 검출

- '10.3.8. 중국 측이 한국산 심비디움묘 수출검역 강화 요청 및 선충재검출 시 진일보된 검역조치 시행 통보
  - ※ '09.6. 및 '10.1. 중국 산둥성 및 광둥성으로 수출한 심비디움 분화 5,500개에서 중국측 검역선충(*Meloidogyne* sp., *Longidorus* sp.) 검출되어 폐기 및 소독 처리 후 통관
- '11.1.28. 중국 측이 한국산 심비디움묘에서 중국측의 유해세균인 *Erwinia cypripedii* 및 *Burkholderia gladioli* pv. *gladioli* 검출 통보
- '13.3.5. 중국 측이 한국산 심비디움묘에서 중국측의 유해세균인 *Burkholderia gladioli* pv. *allicola* 검출 통보
- '15.2.27. 중국 측이 한국산 심비디움묘에서 중국측의 유해바이러스(Tomato Ringspot Nepovirus) 검출 통보

나. 중국 측의 국산 심비디움에 대한 검역강화에 따라 국산 심비디움 수출 애로

- 국산 심비디움에서 계속된 병해충 검출에 따라 중국측이 수입검사(검사기간 : 15일) 기간 준수 등 수입검사 철저에 따라 통관기일 지연 등 수출 애로
- 국산 심비디움 중국 수출관련 수출업체 애로사항 인지
  - 중국측의 긴 수입검역 검사기간으로 인하여 통관기일 지연 등 수출 애로

다. 국산 심비디움에 대한 중국 측 검역요건 완화 추진

- '11년 한-중 식물검역회의시 관련업체 애로사항 중국측에 제기
  - 양국이 기술교류를 하여 심비디움의 검역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검사기간 단축 등 신속한 검역추진 합의

- 국산 심비디움 재배지 및 수출검사 시스템에 대한 중국측 현지조사('12.11.) 실시
  - 중국 측 현지조사 후 국산 심비디움의 통관상의 애로는 대체로 해소
- 다만, 국산 심비디움에서 계속적으로 중국 측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됨에 따라 국산 심비디움과 관련하여 중국 측이 수출 전 관리방안 요구 및 양국 간 이행사항 제안('13.1월)
  - (우리측) 농가·수출업체 등록, 재배지 병해충 관리, 수출검사
  - (중국측) 등록업체에 대한 검역절차 간소화 및 수입검역 요건 완화
  - 양국 간 한국산 심비디움 대중국 수출을 위한 의정서 체결

#### 라. 대중국 국산 심비디움 수출검역요령 제정('15년 1월)

- 주요 수출검역 요령
  - 수출업체 및 심비디움 재배농가 등록
  - 심비디움 재배지 등록 요건, 병해충에 대한 방제 및 방제기록
  - 재배지검역 및 예찰조사
  - 수출검사 및 증명서 발급 등

#### 마. 대중국 국산 심비디움 수출검역요령 개정('18년 2월)

- 주요 개정 사항
  -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문명칭 약자 변경(QIA→APQA)으로 재배포장 및 수출업체 등록번호 변경 및 수출포장재 표기 사항 변경

##### [변경사항]

- 재배포장 등록번호 : (변경전) QIA-35-02 → (변경후) APQA-35-02
- 수출업체 등록번호 : (변경전) QIA-EX-01 → (변경후) APQA-EX-01

※ 한국산 춘란(*Cymbidium forrestii*)은 상기 수출검역요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중국 측과의 양자회의에서 확인('18.10.17.)



## 미 국 [심비디움묘·호접란묘]

### part 02

가. 국산 심비디움 및 팔레놉시스 미국 우려 병해충

- 난충채벌레(*Dichromothrips smithi*), 난가루깍지벌레(*Pseudococcus dendrobiorum*),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 들민달팽이(*Deroceras varians*), 사철나무 탄저병(*Colletotrichum boninense*) 5종

나. 주요 수출검역요건

- 승인된 재배매체 사용 (수태 등 22종 또는 이들의 조합)만 사용
  - 수태 (물이끼), 펄라이트, 암면, 질석 등 및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것에 한함
- 재배온실 승인, 등록, 관리
  - (온실 요건) 2중문 출입구, 환기구/개구부 0.6mm망 설치,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멀칭 등(모래, 흙, 잡초, 식물병해충 및 잔재물 없어야), 벤치 46cm이상, 벤치 다리에 동판 설치
  - (한미 합동조사) 신규 온실 승인 전 미국과 합동조사 후 승인
  - (재배 적용대상 식물) 조직배양묘, 식물검역관의 검사결과 식물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재배매체가 부착되지 않은 묘, 온실내 직접 발아시킬 종자 또는 포자
  - (재배 요건) 온실 반입 전 재배매체 없는 상태로 검역을 실시, 수출 전 재배시설에서 4개월 이상 재배 필수
- 재배지검역 (3개월에 1회씩)
  - 미국의 우려병해충 발생여부 및 온실요건 적합여부 등
- 수출 검역
  - 미국 수출되기 30일 이내에 수출물량의 2% 샘플링하여 수출검역
  - 수출검역증명서에 병해충 무감염 등 부기사항 기재
  - 미국 도착지에서 수입검역실시





2021

식물검역제도 및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요건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 참 고 자 료





## [참고 1]

## 2020년 신선 농산물 수출검역실적

(기준일 : 2020.12.31, 단위 : M/T)

| 품 목 | 국 가   | 단지수 | 참여<br>농가 | 재배<br>면적(ha) | '20년 수출 |           | '19년 수출 |           | 대 비<br>(B/A) |
|-----|-------|-----|----------|--------------|---------|-----------|---------|-----------|--------------|
|     |       |     |          |              | 건 수     | 수 량(B)    | 건 수     | 수 량(A)    |              |
| 배   | 미 국   | 13  | 1,220    | 1,323.6      | 706     | 9,247.50  | 848     | 11,259.40 | 82%          |
|     | 대 만   | 75  | 1,888    | 2,422.3      | 556     | 8,539.50  | 667     | 10,042.80 | 78%          |
|     | 캐나다   | 7   | 93       | 109          | 28      | 353       | 35      | 402.1     | 88%          |
|     | 호 주   | 5   | 61       | 44.6         | 15      | 129.2     | 28      | 217.6     | 61%          |
|     | 멕시코   | 1   | 7        | 4.3          |         | 0         |         | 0         |              |
|     | 브라질   | 4   | 23       | 20.2         | 1       | 10.2      | 2       | 20.5      | 50%          |
|     | 아르헨티나 | 2   | 10       | 7.6          |         | 0         |         | 0         |              |
|     | 인 도   | 1   | 1        | 0.3          | 1       | 16.2      | 9       | 83.3      | 59%          |
|     | 태 국   | 9   | 120      | 169.4        | 45      | 121.7     | 52      | 157       | 173%         |
|     | 소 계   | 108 | 3,303    | 3,931.9      | 1,352   | 18,417.30 | 1641    | 22,182.70 | 80%          |
| 사 과 | 대 만   | 18  | 664      | 408.4        |         | 286.4     |         | 910.7     | 31%          |
|     | 미 국   | 1   | 13       | 19           |         | 42.2      |         | 33.6      | 126%         |
|     | 태 국   | 6   | 24       | 19.1         |         | 0.2       |         | 7.1       | 3%           |
|     | 소 계   | 25  | 701      | 446.5        |         | 328.8     |         | 951.4     | 35%          |
| 포 도 | 미 국   | 5   | 267      | 122.1        |         | 193.6     |         | 279.9     | 69%          |
|     | 캐나다   | 11  | 217      | 142.9        |         | 124.4     |         | 91.8      | 136%         |
|     | 호주    | 5   | 68       | 43.3         |         | 8.1       |         | 33.1      | 24%          |
|     | 뉴질랜드  | 8   | 103      | 66.9         |         | 41.7      |         | 45.8      | 91%          |
|     | 중 국   | 19  | 465      | 224.8        |         | 426.4     |         | 407.5     | 105%         |
|     | 태 국   | 11  | 123      | 61           |         | 78.7      |         | 57.4      | 137%         |
|     | 소 계   | 59  | 1,243    | 661          |         | 872.9     |         | 915.5     | 95%          |

| 품 목      | 국 가 | 단지수 | 참여<br>농가 | 재배<br>면적(ha) | '20년 수출 |          | '19년 수출 |          | 대 비<br>(B/A) |
|----------|-----|-----|----------|--------------|---------|----------|---------|----------|--------------|
|          |     |     |          |              | 건 수     | 수 량(B)   | 건 수     | 수 량(A)   |              |
| 감 굴      | 미 국 | 7   | 148      | 96.9         |         | 394.4    |         | 514      | 77%          |
|          | 태 국 | 3   | 34       | 4.2          |         | 2.7      |         | 1        | 270%         |
|          | 소 계 | 10  | 182      | 101.1        |         | 397.1    |         | 515      | 77%          |
| 감        | 베트남 | 14  | 109      | 194.2        |         | 407.4    |         | 16       | 2546%        |
|          | 태 국 | 6   | 135      | 182          |         | 333      |         | 333.2    | 100%         |
|          | 소 계 | 20  | 244      | 376.2        |         | 740.4    |         | 349.2    | 212%         |
| 복숭아      | 대 만 | 1   | 15       | 8.6          |         | 0        |         | 0        |              |
|          | 태 국 | 7   | 55       | 63           |         | 11.8     |         | 7.2      | 164%         |
|          | 소 계 | 8   | 70       | 71.6         |         | 11.8     |         | 7.2      | 164%         |
| 파프<br>리카 | 중 국 | 19  | 225      | 266.4        |         | 2.7      |         | 0        |              |
|          | 미 국 | 1   | 3        | 8.8          |         | 0        |         | 0.03     |              |
|          | 필리핀 | 1   | 7        | 8.9          |         | 0        |         | 0        |              |
|          | 소 계 | 21  | 235      | 284.1        |         | 2.7      |         | 0.03     |              |
| 딸기       | 캐나다 | 6   | 17       | 4.4          |         | 36.4     |         | 34.7     | 105%         |
|          | 베트남 | 44  | 389      | 217.8        |         | 513.7    |         | 525.6    | 98%          |
|          | 호 주 | 1   | 1        | 0.1          |         | 0        |         | 0        |              |
|          | 태 국 | 35  | 428      | 249.4        |         | 667.1    |         | 554.5    | 120%         |
|          | 소계  | 86  | 835      | 471.7        |         | 1,217.20 |         | 1,114.80 | 109%         |
| 참다래      | 대 만 | 3   | 38       | 23.9         |         | 0.4      |         | 0        |              |
| 토마토      | 베트남 | 2   | 4        | 2.5          |         | 0        |         | 0        |              |
| 참 외      | 태 국 | 1   | 24       | 1.8          |         | 0        |         | 0        |              |
| 총 계      |     | 352 | 6,999    | 6,542        |         | 22,002   |         | 26,884   |              |

## [참고 2]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 및 관할구역

## ① 지역본부

| 명 칭      | 위 치<br>(대표전화)                       | 관할구역                                                                                                                                         |
|----------|-------------------------------------|----------------------------------------------------------------------------------------------------------------------------------------------|
| 인천공항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br>(민원실: 032-740-2086) | 인천국제공항 및 영종동·운서동·용유동, 옹진군 북도면                                                                                                                |
| 영남지역본부   | 부산광역시<br>(민원실: 051-600-6285)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
| 중부지역본부   | 인천광역시<br>(민원실: 032-722-8266)        | 인천광역시(인천국제공항 및 영종동·운서동·용유동·옹진군북도면 제외), 경기도(고양시·구리시·김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부천시·성남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하남시·가평군·양평군 및 연천군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br>(식물검역과: 02-2650-0644)      |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구리시·김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부천시·성남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하남시·가평군·양평군 및 연천군, 강원도                                                             |
| 호남지역본부   | 전라북도 군산시<br>(식물검역과: 063-460-9454)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
|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br>(민원실: 064-728-5400)  | 제주특별자치도                                                                                                                                      |

② 사무소

| 명 칭            |         | 위 치<br>(대표전화)                         | 관할구역                                                                                               |
|----------------|---------|---------------------------------------|----------------------------------------------------------------------------------------------------|
| 영남<br>지역<br>본부 | 김해공항사무소 | 부산광역시<br>(051-971-0480)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동·강동동·대저1동 및 대저2동,<br>경상남도 김해시(생림면 및 도요리 제외)                                           |
|                | 부산신항사무소 | 부산광역시<br>(051-606-521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명지동 및 천가동, 경상남도<br>창원시 진해구 웅동1동·웅동2동 및 웅천동                                           |
|                | 신선대사무소  | 부산광역시<br>(051-627-4519)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및 용당동, 수영구·해운대구<br>및 기장군                                                              |
|                | 대구사무소   | 대구광역시<br>(053-230-7023)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중 경산시·영천시·포항시·고령군<br>·성주군·영덕군·영양군·울릉군·울진군·청도군·청송군                                      |
|                | 구미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br>(054-462-3873)            | 경상북도 중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영주시<br>·의성군·예천군·봉화군·영양군·칠곡군·군위군                                         |
|                | 울산사무소   | 울산광역시<br>(052-257-9297)               | 울산광역시(울주군 삼남면 및 삼동면은 제외), 경상북도<br>경주시                                                              |
|                | 창원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br>(055-981-5420)            | 경상남도 중 거제시·사천시·진주시·통영시·창원시(진해구<br>웅동1동·웅동2동·웅천동은 제외)·거창군·고성군·남해군<br>·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 및 합천군 |
|                | 김해사무소   | 경상남도 김해시<br>생림면 도요리<br>(055-335-0210)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
|                | 양산사무소   | 경상남도 양산시<br>(055-372-1771)            | 경상남도 중 양산시·밀양시 및 울산광역시 중 삼남면·<br>삼동면                                                               |

| 명 칭            |         | 위 치<br>(대표전화)                        | 관할구역                                                        |
|----------------|---------|--------------------------------------|-------------------------------------------------------------|
| 중부<br>지역<br>본부 | 의왕사무소   | 경기도 의왕시<br>(031-462-0581)            | 경기도 중 과천시·광명시·광주시·군포시·시흥시·수원시·안산시·안성시·인양시·용인시·이천시·의왕시 및 여주군 |
|                | 평택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br>(031-684-6391)            | 경기도 중 오산시·평택시 및 화성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및 당진군                     |
|                | 청주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br>(043-273-0586)           | 충청북도                                                        |
|                | 천안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br>(041-558-1778)           |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당진군 및 서산시 대산읍은 제외)                     |
| 서울<br>지역<br>본부 | 김포공항사무소 | 서울시김포공항<br>(02-2664-3844)            |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경기도 고양시 및 김포시                             |
|                | 속초사무소   | 강원도 속초시<br>(033-635-9125)            | 강원도 강릉시·속초시·고성군·양구군·양양군 및 인제군                               |
| 호남<br>지역<br>본부 | 광주사무소   | 광주광역시<br>(062-975-6070)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강진군·곡성군·담양군·영광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해남군 및 화순군       |
|                | 무안공항사무소 | 전라남도 무안군<br>무안국제공항<br>(061-452-6796) | 전라남도 중 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함평군 및 진도군                            |
|                | 전주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br>(063-247-9961)           | 전라북도 남원시·전주시·무주군·순창군·완주군·임실군·장수군 및 진안군                      |
|                | 광양사무소   | 전라남도 광양시<br>(061-798-4915)           | 전라남도 중 광양시·순천시·여수시·고흥군·구례군 및 보성군                            |
| 제주<br>지역<br>본부 | 제주공항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br>제주국제공항<br>(064-746-2460)  | 제주특별자치도 중 제주국제공항                                            |